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공유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은평구 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전(역)재의 경우, 반드시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2022) 00페이지에서 전(역)재」 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한 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수록된 자료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952-1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연구수행기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연구책임자: 이진아 노무사

목차

I. 서론	0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09
2. 연구 목적 및 내용	12
3. 연구 방법	13
II.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현황과 쟁점	15
1. 은평구 일반 현황	15
2. 휴게시설 관련 법	16
3. 미화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25
4.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28
III. 실태조사 결과	34
1. 개요	34
2. 기초 현황	35
3. 휴게시설 현황	42
IV. 결론 및 제언	60
1.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전용휴게시설 마련	60
2.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 및 점검	61
3. 휴게시설의 지상화 및 환기 문제 개선	62
4. 휴게시설의 지상화 및 습도조절기기 설치	64
5. 침대, 정수기, 냉장고 등 비품구비	65
7. 샤워시설 설치	66
[부록]	80
휴게시설 실태 조사 설문지	80
은평구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공유회 자료집	88

표 목차

표1. 설문조사 내용(섹션별)	34
표2.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	47
표3. 휴게시설 단위면적(3.3㎡)당 인원	50
표4-1. 휴게시설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50
표4-2.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52
표5. 휴게시설 환풍기기 설치율	54
표6. 휴게시설 개선요청사항	58
표7. 선행연구 비교 :휴게시설 비품설치비율	66

그림 목차

그림1. 고용방식	35
그림2. 동종 업무 총 경력	36
그림3. 조사대상자 직종	36
그림4. 근로계약 약정방식	37
그림5. 근로계약기간 (갱신단위)	38
그림6. 현 근무지 사업장 전체근로자수	39
그림7. 휴게시설 설치현황	40
그림8. 휴게시설 남녀 구분 설치 여부	40
그림9.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43
그림10. 휴게시설 위치	44
그림11.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45
그림12. 휴게시설 주변 환경의 쾌적도	46
그림13.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48
그림14. 휴게시설이 공간(면적)이 충분한지 여부 (사용인원 대비)	49
그림15. 휴게시설의 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50
그림16. 조명시설 설치여부	53
그림17. 환풍기기 설치여부	53
그림18. 창문 유무	55
그림19. 샤워시설 유무	56
그림20. 최근 1년 이내 휴게시설 정비 개선 유무	57
그림21. 휴게시설 개선필요성	58

제1장

서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이 시행됨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라고 보고있기는 하나,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어도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로 보고 있음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의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점검 필요성이 커짐
- 이번 연구대상인 경비 직종과 미화 직종의 종사자들 휴게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을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시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하여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하여 법 시행날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며 특별지도기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 9월 7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배포하였음

- 경비 직종은 대표적인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24시간 맞교대 방식의 교대제가 일반화된 직종임
- 경비 직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온 바, 휴게시간 확대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편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함께 부각되어옴. 그에 따라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경비 직종의 경우 휴게시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초소가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옴
- 2019년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진행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경비노동자의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휴게공간 유무와 관련하여, 경비 초소와 겸용 중이라는 응답이 41.4%, 별도 휴게실이 마련되어있다는 응답이 58.9%였으며, 별도 휴게실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휴게공간 위치가 지상이라는 응답이 39%, 지하라는 응답이 61%였음
- 지금까지도 경비초소가 휴게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경비초소는 면적 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의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경비초소가 아닌 휴게시설이 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여 더 나아가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의 적극적 지도점검이 필요해진 상황임
-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하여 휴게공간 및 물품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특히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공간은 계속해서 법적·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확대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의 ‘202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지자체 단위의 휴게공간 개선 지원사업들이 이뤄져왔으며, 은평구 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휴게 공간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음
- 미화 직종의 경우 최근 들어서 관내 취약계층으로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기는 하였으나, 경비 직종과는 달리 휴게시간이 길지 않아서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음
- 서울시는 2012년 47개 기관 청사 71개 휴게시설의 법정위생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개선조치, 2013년 ‘청소근로환경시설 실태조사 및 청소근로자 인터뷰’, 2014년 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자문TF 운영 및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2019년 ‘서울시 청소노동자근로환경 현장점검’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음
-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 내 자치구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서울시 본청, 사업소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소노동환경시설에 대해 매년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왔음
- 2010년 이후 은평구 관내의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노동자 역시 증가하여왔으나 경비 및 미화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조사는 2020년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은평구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와 ‘은평구 미화노동자 노동실태조사’가 유일함

2. 연구 목적 및 내용

○ 은평구 소재의 미화·경비노동자들 휴게시설 현황 파악

- 경비 직종은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휴게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미화 직종은 업무 특성 상 탈의 및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이 없거나, 휴게공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함
-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도, 『은평구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경비직종에서 휴게실과 경비실을 겸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36.1%에 이르고,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도 10.3%로 나남. 『은평구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2020)에서는 미화직종에서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12.4%로 확인됨
- 다만, 해당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점검기간을 포함하여 이뤄진 연구이고 휴게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형태가 아닌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설문을 통한 점검 형식 상 범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개선 사항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에 비취 개선필요사항 발굴 및 지원 모색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
- 더 나아가 은평구 관내 조례에 비취 기본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여함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에 따르면, 구

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 종사자)의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함), 냉난방설비)설치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 및 개선 권고 등의 노동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경비 및 미화 직종의 휴게공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함

○ 설문조사

- 은평구 관내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미화·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근로형태, 휴게시설 및 이용 관련 현황에 대해 확인 및 점검하는 설문을 진행함
- 현장 방문 및 점검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못하였으나, 설문 요원들이 이번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을 직접 문답 형식으로 실시하여 휴게시설 현황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함

제2장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현황과 쟁점



II.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현황과 쟁점

1. 은평구 일반 현황¹⁾

가. 지역 특성

- 은평구는 16개동(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녹번동, 대조동, 불광1동, 불광2동, 수색동, 신사1동, 신사2동, 역촌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증산동, 진관동)으로 구성된 자치구로 총 면적 29.7km²이며, 서울시의 4.91%를 차지하고 있음
- 16개동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진관동(11.53km²)은 전체 면적 중 3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광1동(3.13km², 10.54%), 녹번동(1.79km², 6.03%) 순임
- 진관동 지역이 뉴타운 지대로 2022년 11월 기준으로 K-apt²⁾에 등록된 아파트단지가 39개로 16개동 중 가장 많음
- 용도지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총 29,788,522m² 중 주거지역이 15,365,100m²로 약51.6%, 상업지역이 521,342m²로 약1.8%, 녹지지역이 13,902,080으로 약 46.7%로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평구의 산업별 종사자수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총 93,631명 중 보건업 및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은평구 통계연보 2021

2) K-apt(www.k-apt.go.kr)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이 2/3이상 서면동 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423명(약17.5%)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이 15,220명(약16.3%)으로 그 뒤를 이음

- 이번 조사 대상인 경비 직종 및 미화 직종이 포함되어있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1,597명(약1.7%)이 종사하고 있음

나. 은평구 공동주택 일반현황

- 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7,373호로 전체 주택수 142,135호에 대비하여 40.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43.3% (전체 주택수 : 150,658호, 공동주택수 : 65,268호)로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호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수(150,658호) 대비 39.45%(59,438호)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다세대주택(69,210호) 다음으로 많은 주택형태임
- 건축연도별 주택 현황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2,456호로 그 다음으로 많은 주택형태인 다세대주택(1,134호)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남. 즉, 아파트 거주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 휴게시설 관련 법

가. 휴게시간 관련 법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함. 이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
- 그런데 전용휴게공간이 아니라 근무장소에서 휴게를 취하는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 외부의 방해가 없다 하더라도 휴게공간이 충분한 휴식·수면 등을 취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따라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정확한 설치가 중요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 휴게시설 설치의무 관련법

-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직종 중에서 2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건당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가 부과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휴게시설 설치기준

-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

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또한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함

- 환경미화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함

-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하여 2021년 10월 25일에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온 휴게시설 기준을 법상 승인 기준으로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일부개정됨

- 이에 2021년 10월 25일부터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휴게시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3. 미화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가. 휴게시설 위치

- 본 센터의 선행연구인 「은평구 미화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2020)」(이하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이 87.6%로 대부분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휴게실이 지상에 있는 경우가 55.2%였고 지하에 있다는 응답은 44.8%였음. 그런데 휴게시설의 위치가 각 노동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 노동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이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 특히 미화노동자는 업무특성상 청소해야할 지점으로 이동이 잦은 편이며, 청소도구를 지참하고 담당 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작업장소와 휴게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함. 이에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과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나. 휴게시설 주변 환경

- 상기한 바와 같이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 (44.8%)는 응답이 거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2020)」에 따르면 휴게실이 아파트 지하공간에 임시로 마련된 경우 휴게시설은 ‘지하에 가벽으로 설치한 경우’, ‘지하에서 걸레 세척과 취사를 함께 하는 경우’, ‘천장에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 ‘가벽도 없이 지하공간 한쪽에 위치한 경우’, ‘지하 설비 사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불완전한 공간이 다수였음
- 또한 「파주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지하 휴게시설은 주차장 자투리 공간이나 기계 설비실, 전기 배전실 등에 패넬로 벽을 세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공간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적지 않고 각종 배관에서 나오는 소음이 곤욕이라는 응답이 있었음.³⁾
- 이에 휴게시설이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등 휴게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다. 휴게시설 크기

- 「건물청소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2012)」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물청소원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어도 상당히 좁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⁴⁾
- 이에 휴게시설의 면적과 높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하며,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

3) 이종구, “변기 옆에서 밥 먹고 쥐까지 출몰”...아파트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 한국일보, 2020. 12. 17.

4) 정혜선 등. 건물청소원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2012. 5쪽

다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라. 휴게시설 온도·습도·조명 및 환기

- 휴게시설은 적절한 온도(18℃ ~ 28℃)를 유지해야 하나,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서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에 그쳤고, 선풍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7%였음. 또한 난방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였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폭염 상황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냉난방 기능이 있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범위 및 가동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서 창문이나 환풍기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였으므로, 나머지는 창문이나 환풍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하에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환기 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2020)」에 따르면 창문이나 환풍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겨울에는 추워서 창문이나 환풍시설을 닫는 경우 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음. 이에 환풍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그 밖에 휴게시설에 적절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명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습도 조절기기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마. 의자 등 비품 구비

-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시설에 소파나 등받이를 갖춘 경우가

32.1%에 그쳤고, 정수기나 물 마시는 곳이 구비된 경우도 60.6%에 그쳤음. 다만 냉장고의 경우 91%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이내에 정수기 등이 설치됨으로서 휴게시설의 정비나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바. 샤워시설 설치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화노동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생과 관련된 표준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주가 작업장 내에 충분히 공급해야 함⁵⁾
- 세면·목욕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 따르면 미화노동자를 위한 샤워실은 16.6%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하므로, 샤워시설 설치현황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4.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가. 전용휴게시설 유무 및 위치

- 본 센터의 선행연구인 「은평구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2020)」(이하 ‘경비

5) 김원 외 4명,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8.10.31, 180쪽

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을 겸용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경비초소와 별도로 지하에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이 30.9%였으며, 별도 지상 휴게실이 있는 경우는 22.7%였고, 없다는 응답도 10.3%로 나타남

- 경비초소를 휴게시설로 겸용하는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기 어려워 사실상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실제로 경비노동자로 하여금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하는 등의 사정으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판단된 대법원 판결도 있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이에 전용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무장소와는 별개의 휴게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을 겸용하지 않더라도, 계단 밑이나 물품보관장소, 기전실 등을 형식적으로만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만들지 않아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노인정을 휴게시설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 밤에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 물론 전용휴게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휴게시설이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됨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평 지역 경비노동자들의 규정상 휴게시간은 8.1 시간인데, 실제 휴게시간은 3.4시간으로 차이가 무려 4.7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 휴게시간이 매우 적게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게시설이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욱 휴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실제로 휴식

이 가능한 시간과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휴게시설에는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휴게시설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지, 전용휴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 이용이 꺼려지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나. 휴게시설 주변 환경

-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을 겸용하는 경우 소음에 노출되기 쉽고, 경비초소와 별도로 휴게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지하에 휴게시설이 위치한 경우 석면으로 뒤덮인 천장 아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⁶⁾. 이에 휴게시설이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등 휴게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다. 휴게시설 크기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실에 3명밖에 잘 수 없는 환경인데 10명이 자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등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크기의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있음. 또는 1평짜리 휴게시설을 설치해두어 도저히 휴게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음.

6) 석면 가득한 지하실...열악한 휴게 공간이 경비원 건강에 영향, KBS뉴스, 2021. 4. 17.

-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비노동자가 있는 경우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크기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더불어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와 휴게시설 개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을 겸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비초소는 면적이 매우 좁아 책상이나 간이의자 이외에 별도로 휴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을 수 있음.
- 좁은 경비초소에서는 수면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고⁷⁾, 초소가 좁다 보니 초소 내에 마련된 화장실에 밥솥과 전자레인지 등을 두고 변기 옆에서 밥을 짓거나 데워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⁸⁾. 따라서 경비초소의 면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휴게시설 온도·습도·조명 및 환기

- 휴게시설은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해야 하나,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서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였고, 난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9.2%로 그쳤음. 지하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 난방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겨울에는 장판 온도를 올려도 냉기를 막지 못해 추워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⁹⁾ 만약 냉난방 기능이 있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범위 및 가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서 경비실의 경우 대부분이 에어컨,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난로는 85%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됨. 그런데 일부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의 경우 실내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 바깥만큼 더울 수 있고¹⁰⁾, 이 경우 경

7) 윤준호, [법정B컷]3.2㎡ 초소에 갇힌 경비원의 삶을 아십니까, 노컷뉴스, 2021. 8. 15.

8) 고경희, “화장실에서 밥 지어 먹어봤나요?”, 한국아파트신문, 2022. 9. 20.

9) 김지혜, 설 곳 없는 인천지역 경비노동자… 쪽방 휴게실엔 곰팡이 습기 가득, 경기일보, 2021. 10. 16.

10) [폭염]② 경비원 체험해보니 “경비실도 찜통, 제 차에 가서 쉬어요”, KBS NEWS, 2021. 7. 27.

비초소를 휴게시설로 겸용하고 있다면 휴식을 취하기가 불가능할 것임

- 상기한 바와 같이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 결과 경비초소와 별도로 지하에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이 30.9%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기실이나 배관실 지하에 휴게실을 만든 경우 환풍기와 같은 기본 설비가 없고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필 수 있음.¹¹⁾ 이에 적절한 습도(50% ~ 55%) 유지와 창문 등을 통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마. 의자 등 비품 구비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시설에 냉장고가 구비되었다는 응답이 59.6%, 취침도구가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69.2%에 그쳤음. 경비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일반적인 만큼 근무지에서 식사와 취침을 해결해야 함에도, 냉장고와 취침도구가 구비된 비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야 하므로, 최근 1년 내에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5. 기타 휴게시설 관련 쟁점: 휴게시설 성별구분 설치여부

- 경비노동자는 주로 남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미화노동자는 주로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직무와 관계없이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설이 성별구분 없이 운영될 수 있음. 이 경우 아파트 노동자들 모두가 마음 편히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11) 김지혜, 실 곳 없는 인천지역 경비노동자... 쪽방 휴게실엔 곰팡이 습기 가득, 경기일보, 2021. 10. 16.

제3장

실태조사 결과



Ⅲ. 실태조사 결과

1. 개요

가. 조사방식

- 은평구 관내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 100명에 대하여 조사원에 의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함
- 1개 단지 내 평균 2.56명의 노동자를 조사함(1개 단지당 1~4명으로 제한함)
-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8%, 여성 42%이며, 연령구성은 50대 3%, 60대 60%, 70대 이상 36% 으로 나타남

나. 조사내용

- 4개 섹션(고용 및 직종/ 근무지 현황/ 휴게시설 현황/ 기타(신상정보 등))으로 구성된 26개의 기본 문항과 18개의 보조 문항의 설문을 진행함

〈표1〉 설문조사 내용(섹션별)

섹션1	고용방식 및 유사·동일업무 경력, 재직 직종,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섹션2	사업장 내 근로자수, 소속 용역·도급업체 근로자 수, 성별 근로자 수 등
섹션3	휴게시설 유무 및 위치, 휴게시설 내 비품 및 시설 현황, 작업장과 휴게시

	설까지의 거리, 휴게시설 면적 및 높이, 휴게시설 동시간대 사용인원 등
섹션4	성별 및 연령
※ 각 섹션별로 설문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설문조사지 참고	

2. 기초 현황

가. 고용

- 고용방식과 관련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00명 중 11명이 직접고용, 89명이 용역 및 도급업체 소속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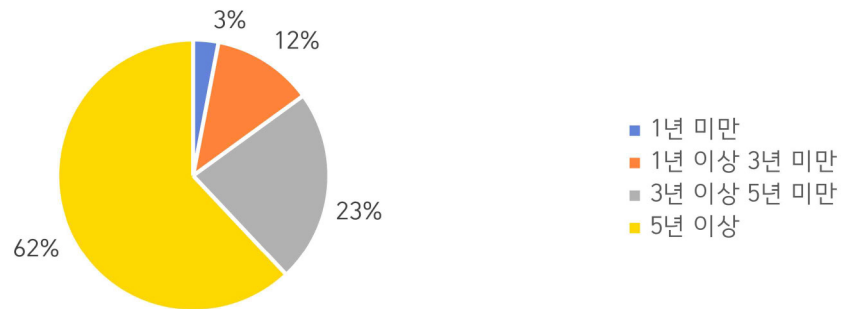
[그림1] 고용방식



나. 동종 업무 총 경력

- 동종 업무 총 경력과 관련하여, 응답자 100명 중 5년 이상이 62명(62%)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3명(23%), 1년 이상 3년 미만이 12명(12%), 1년 미만은 3명(3%)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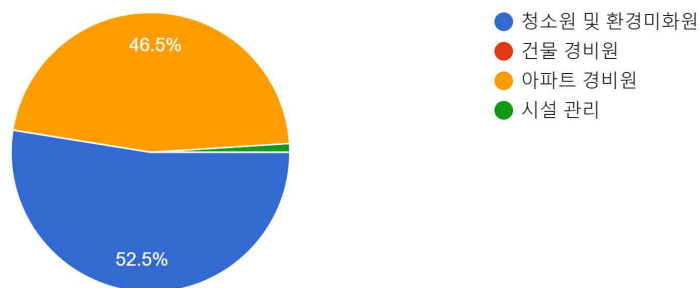
[그림2] 동종 업무 총 경력



다. 조사대상자 직종

- 현재 재직 중인 직종에 대한 응답결과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52명(52.5%), 아파트 경비원이 47명(46.5%), 시설 관리직이 1명(1%)으로 조사됨

[그림3] 조사대상자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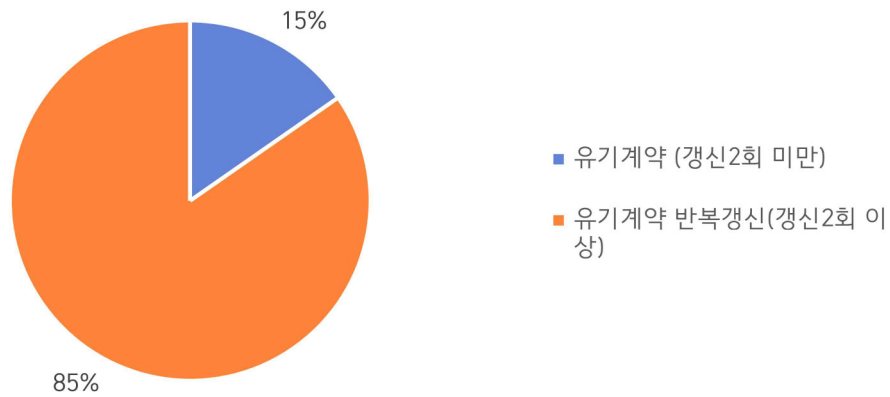


- 이번 조사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직종의 휴게시설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의 응답률이 높은 것임
- 따라서 이하 응답 정리에서 시설관리직 1명은 제외하도록 함

라. 근로계약기간 약정방식

-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응답결과로, 응답자 99명 중 무기계약의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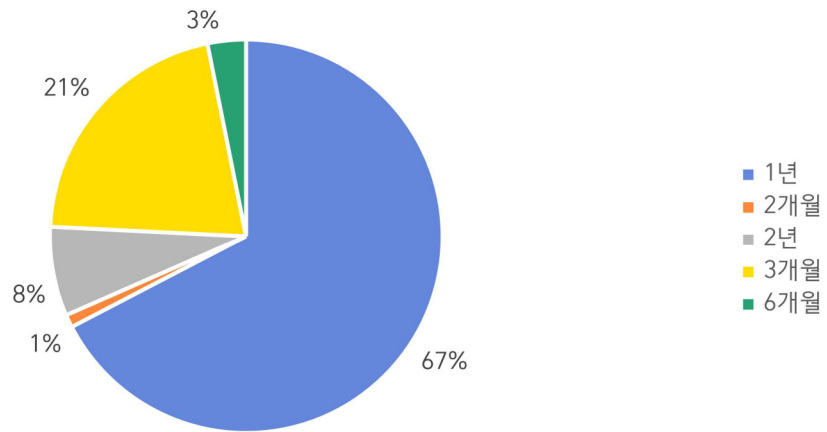
[그림4] 근로계약 약정방식



- 근로계약 체결 시의 계약기간 약정방식 관련 응답 결과로,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한 응답자 95명 중 1년이 64명(약6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이 20명(약21.1%)으로 그 뒤를 이음. 2년이라는 응답이 7명(약7.4%), 6개월이라는 응답이 3명(약3.2%), 2개월이라는 응답이 1명(약1.1%) 있었음
- 직종별로 구분 시, 경비노동자의 경우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한 응답자 45명 중 1년이 26명(약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이 15명(약33.3%), 2년이 2명(4.4%), 2개월이 1명(2.2%), 6개월이 1명(2.2%)으로 조사됨. 미화노동자의 경우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한 응답자 50명 중 1년이 38명(76%), 2년이 5명(10%), 3개월이 5명(10%), 6개월이 2명(4%)으로 조사됨

- 직종 불문 대체로 1년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3개월씩의 계약기간 약정방식이 경비노동자 사이에서 더욱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5] 근로계약기간 (갱신단위)



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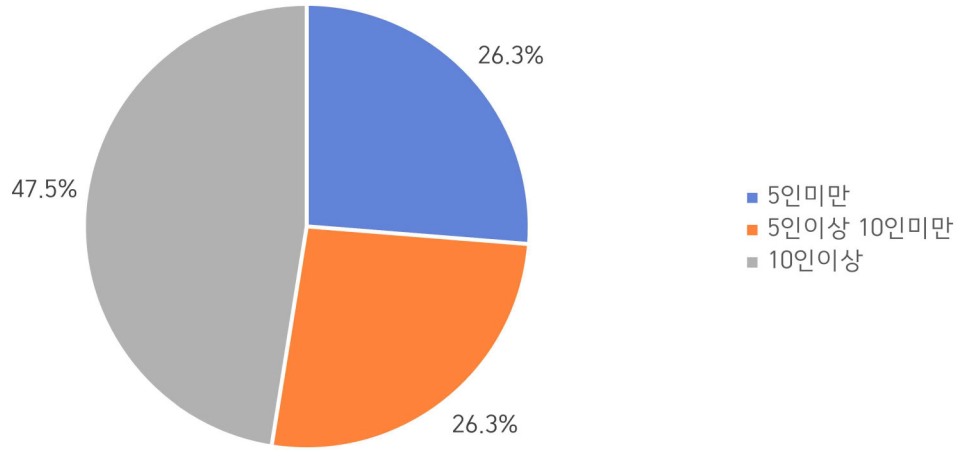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응답결과, 응답자 99명 중 주간 근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53명(53.5%),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명(46.5%)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 구분 시, 경비노동자 47명 중 주간 근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1명(2.1%),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명(97.9%)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화노동자 52명 전원이 주간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 상시 주간근무자의 1일 총 근로시간은 평균 5시간32분으로 조사됨. 24시간 격일제 근무 응답자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14시간53분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 구분 시, 상시 주간근무자의 경우 경비노동자 중 1명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화노동자의 1일 총 근로시간은 평균 5시간27분으로 조사됨
- 휴게시간(근로계약서 기준)과 관련해서는 상시 주간근무자의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파악됨(평균 1시간15분). 24시간 격일제 노동자의 경우 평균 9시간 5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함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대비 실제 휴게시간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간근무자는 대부분 약정휴게시간을 전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로 조사됨
- 다만, 경비노동자 중 24시간 격일제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약정휴게시간 평균 9시간5분인데 비해 실제휴게시간은 평균 7시간53분으로 조사됨. 휴게시간 중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응답한 격일제 노동자는 46명 중 21명으로 45.7%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사. 현 근무지 사업장 전체근로자수

- 현 근무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관련 응답결과, 1명(1%)이 무응답하였고, 응답자 98명 중 1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42명(43%), 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6명(37%), 20인 이상이라는 응답이 20명(20%)으로 나타남
-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 업종 종사자가 2인 이상으로 확인되어 휴게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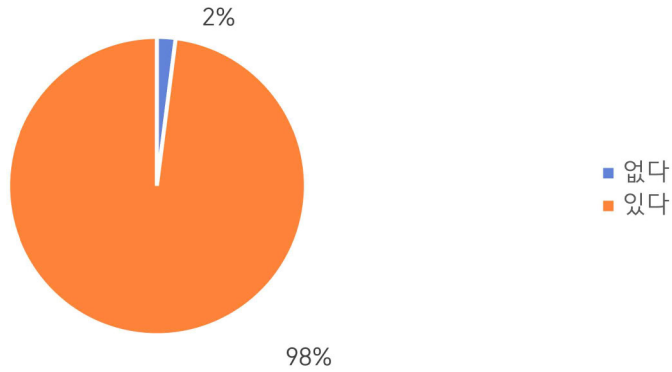
[그림6] 현 근무지 사업장 전체근로자수



아. 휴게시설 설치현황

- 휴게시설 설치현황과 관련한 응답결과, 응답자 99명 중 96명(97%)이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2%)이 휴게시설이 없다고, 1명(1%)이 경비초소라고 응답하였음
-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경비초소라고 응답한 3명의 경우 모두 24시간 격일제 아파트경비원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3명 중 2명은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서 실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보다는 휴게시설이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거나 경비초소를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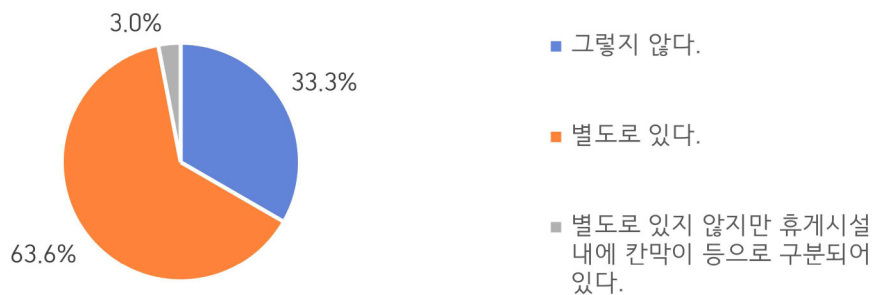
[그림7] 휴게시설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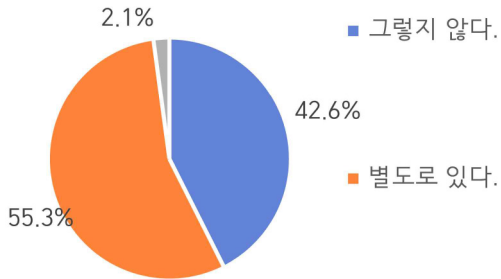
○ 휴게시설이 남녀구분이 되어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응답자 99명 중 63명이 별도로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명이 그렇지 않다, 3명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휴게시설 내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있다고 응답하였음.

-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절대성비가 높기 때문에 직종별 휴게시설이 분리되어있으면서 직종 내 휴게시설의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나, 직종 구분 없이 하나의 휴게공간을 나눠 쓰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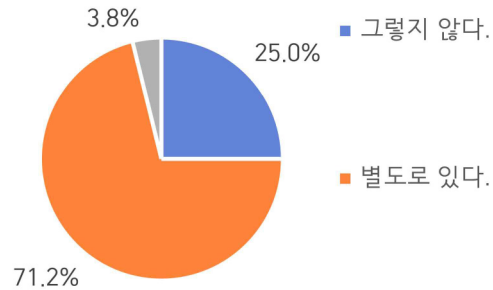
[그림8] 휴게시설 남녀 구분 설치 여부



휴게시설 남녀 구분 설치 여부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 결과



휴게시설 남녀 구분 설치 여부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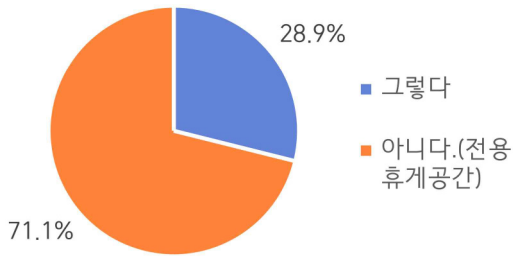
3. 휴게시설 현황

가. 전용휴게시설 유무 및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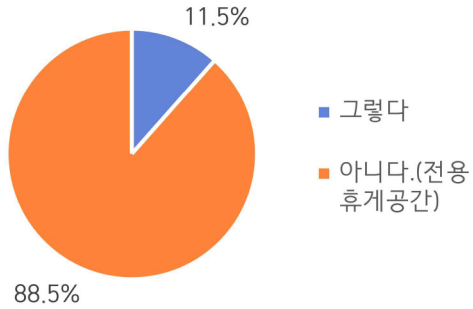
- 전용휴게시설과 관련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4%가 전용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19.6%는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71.1%는 전용휴게시설이 있다고 답하였고, 28.9%는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로 경비초소와 겹하고 있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노인정과 겹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88.5%가 전용휴게시설이 있다고 답하였고, 11.5%는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경비초소, 노인정, 창고, 회의실과 겹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그림9]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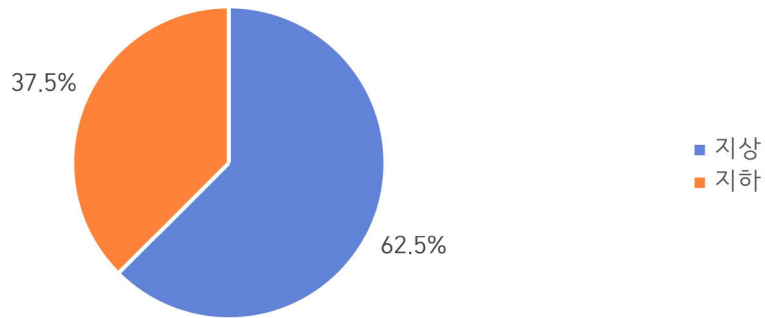


○ 휴게시설의 위치와 관련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2.5%가 지상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7.5%가 지하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함(휴게시설이 실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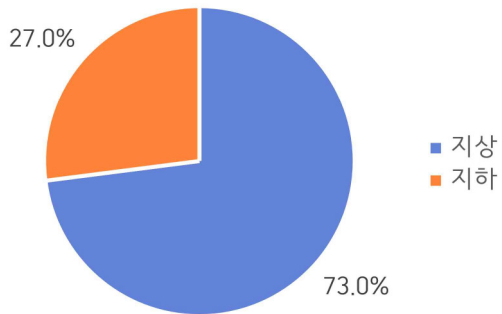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73.0%가 지상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7.0%가 지하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함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54.9%가 지상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5.1%가 지하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절반가까이의 높은 비율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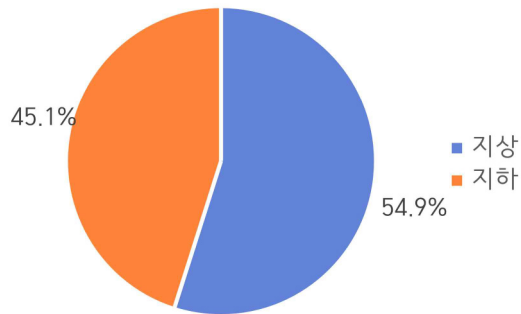
[그림10] 휴게시설 위치



휴게시설 위치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휴게시설 위치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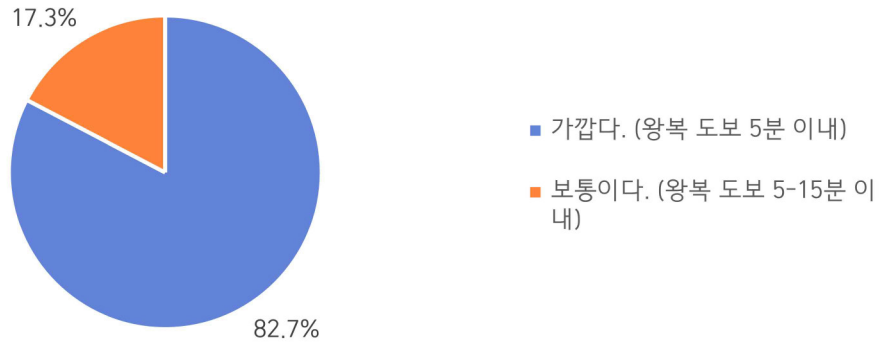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와 관련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2.7%가 왕복 도보 5분 이내로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17.3%가 왕복 도보 5~15분 이내로 보통이라고 응답함(왕복 도보 15분 이상으로 가깝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87%가 왕복 도보 5분 이내로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13%가 왕복 도보 5~15분 이내로 보통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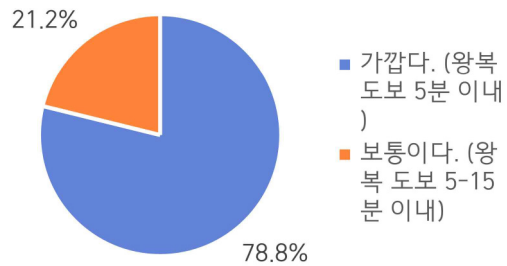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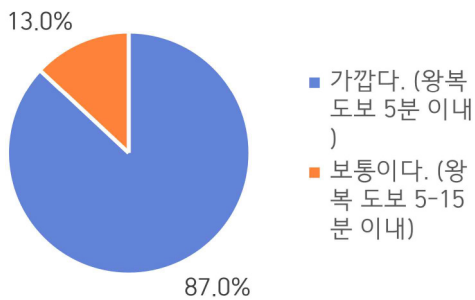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78.8%가 왕복 도보 5분 이내로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21.2%가 왕복 도보 5~15분 이내로 보통이라고 응답함

[그림11]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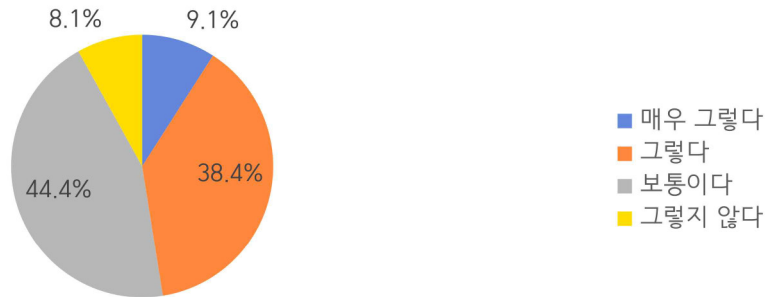


나. 휴게시설 주변 환경 및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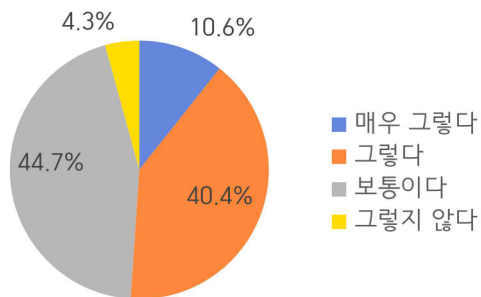
- 휴게시설 주변 환경이 쾌적한 편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7.5%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9.1%, 그렇다 38.4%)을 하였고, 응답자의 44.4%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1%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8.1%, 매우 그렇지 않다 0%)을 하였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 8명의 휴게시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에 위치한 경우였음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51.0%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10.6%, 그렇다 40.4%)을 하였고, 응답자의 44.7%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4.3%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4.3%, 매우 그렇지 않다 0%)을 하였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44.2%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7.7%, 그렇다 36.5%)을 하였고, 44.2%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1.5%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11.5%, 매우 그렇지 않다 0%)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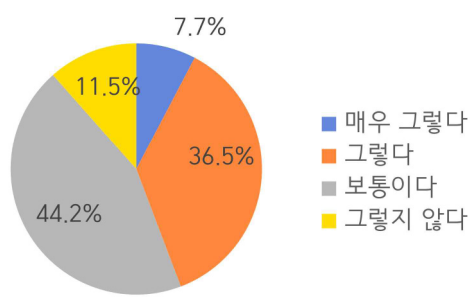
[그림12] 휴게시설 주변 환경의 쾌적도



휴게시설 주변 환경의 쾌적도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휴게시설 주변 환경의 쾌적도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 휴게시설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중복 체크가 가능하도록 응답을 구한 결과, 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문제(7건)와 채광

이 좋지 않은 문제(6건)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환기문제와 채광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들의 휴게시설은 모두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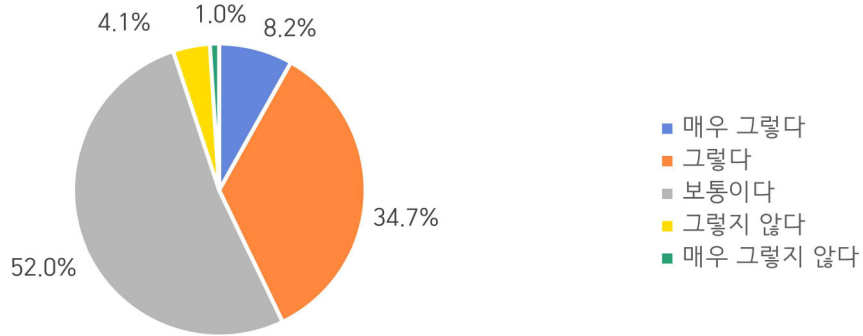
〈표2〉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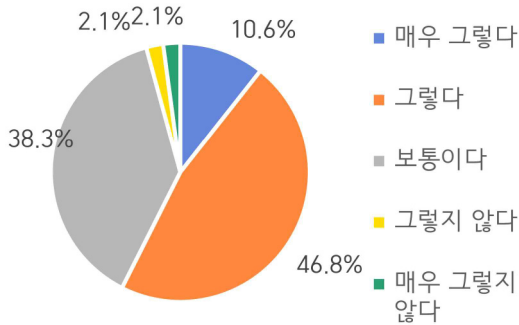
	전체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관리가 잘 안돼서 (청소, 위생상태 불량)	2	1	1
채광이 안 좋아서	6	1	5
환기가 잘 안돼서	7	2	5
난방이 안돼서	1	0	1
벽이 더러워서	1	0	1
냄새가 나서	1	1	0
모기가 있어서	1	1	0

-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2.9%가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2.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1%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함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57.4%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10.6%, 그렇다 46.8%)을 하였고, 응답자의 38.3%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4.2%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2.1%, 매우 그렇지 않다 2.1%)을 하였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29.4%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5.9%, 그렇다 23.5%)을 하였고, 64.7%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5.9%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5.9%, 매우 그렇지 않다 0%)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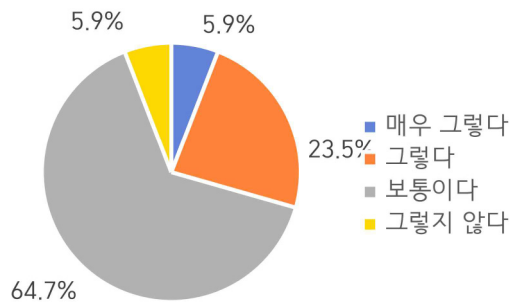
[그림13]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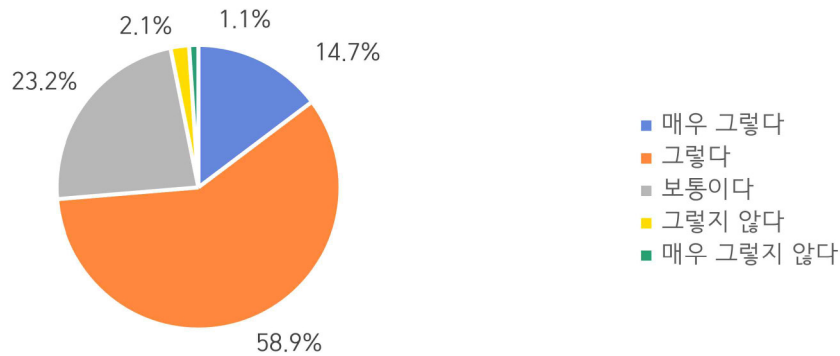
다. 휴게시설 크기

○ 휴게시설의 공간(면적)이 사용인원에 대비해서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3.6%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14.7%, 그렇다 58.9%)을 하였고, 응답자의 23.2%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3.2%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2.1%, 매우 그렇지 않다 1.1%)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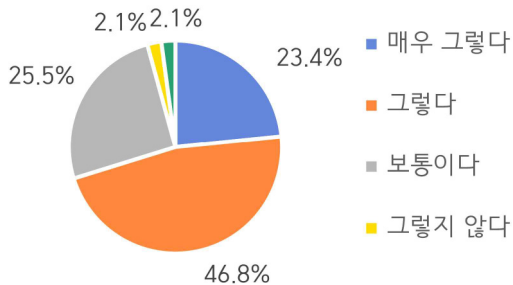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70.2%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23.4%, 그렇다 46.8%)을 하였고, 응답자의 25.5%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4.2%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2.1%, 매우 그렇지 않다 2.1%)을 하였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77.1%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70.8%)을 하였고, 20.8%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1%가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2.1%, 매우 그렇지 않다 0%)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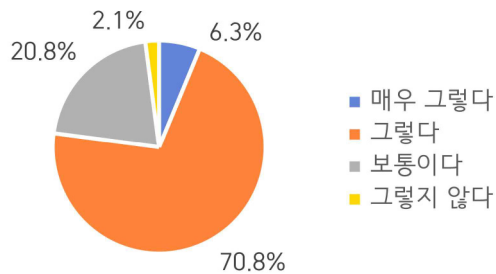
[그림14] 휴게시설이 공간(면적)이 충분한지 여부 (사용인원 대비)



휴게시설이 공간(면적)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경비노동자의 응답결과



휴게시설이 공간(면적)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미화노동자의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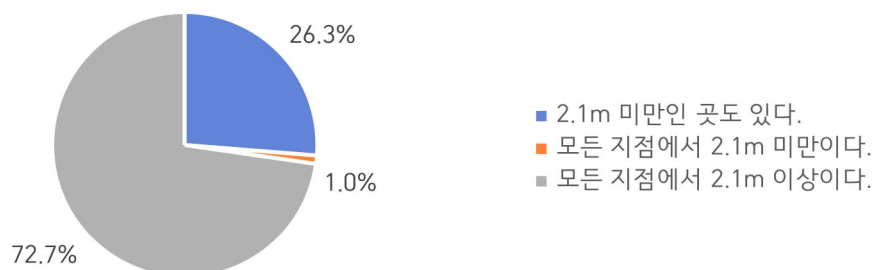
- 설문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평단위로 물어 응답을 구한 결과, 휴게시설이 법상 최소 바닥면적인 6㎡(약 1.82평)보다 작다고 응답한 경우는 1건(1.5평)에 그침. 이에 단위면적 3.3㎡(약 1평)당 동시간대 근무인원을 추가로 분석해보았는데, 응답자의 78.3%가 1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18.6%가 2명 이하이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1%였음

〈표3〉 휴게시설 단위면적(3.3㎡)당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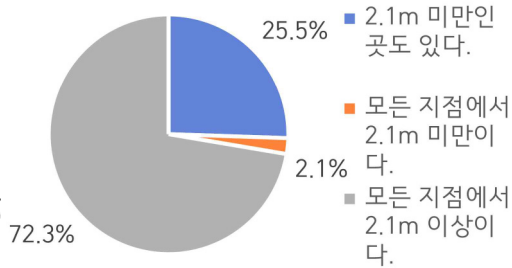
단위면적(3.3㎡)당 인원	전체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1명 이하	78.3%	85.1%	72.0%
1명초과~2명 이하	18.6%	12.8%	24.0%
2명초과~3명 이하	2.1%	0.0%	4.0%
3명 초과	1.0%	2.1%	0.0%

- 휴게시설의 높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2.7%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라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26.3%가 2.1m미만인 곳도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0%가 모든 지점에서 2.1m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72.3%가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라고 답하였고, 25.5%가 2.1m미만인 곳도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약 2%가 모든 지점에서 2.1m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73.1%가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라고 답하였고, 26.9%가 2.1m미만인 곳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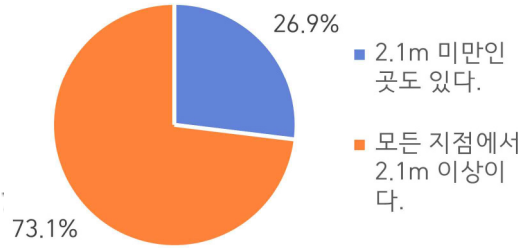
[그림15] 휴게시설의 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휴게시설의 높이에 대한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휴게시설의 높이에 대한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라. 휴게시설 온도·습도·조명 및 환기

- 휴게시설에 냉·난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냉방기기는 응답자 중 85.9%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며, 난방기기는 89.9%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음(단, 본 조사에서는 선풍기도 냉방기기로 분류하여 조사함)
- 또한 냉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건 중 2.6%는 가동 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답하였고, 난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건 중 4.5%는 가동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답하였음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냉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였고 난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87%였으며, 미화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냉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였고 난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였음

- 휴게시설에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1%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며,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5명 중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3명이었으며, 다른 1명은 습도조절기기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기기의 고장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하였음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습도조절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7.7%였음

〈표4-1〉 휴게시설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5.1%	7.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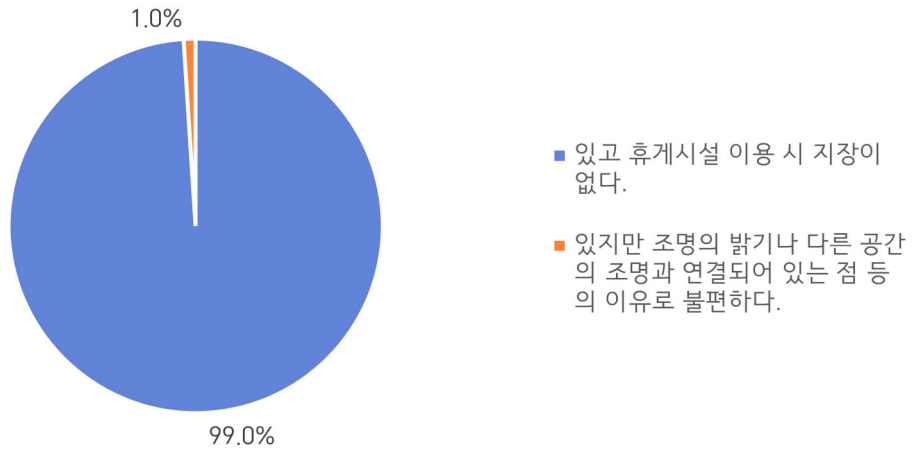
-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시설 중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12.1%였는데,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습도조절기기가 있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17.4%가 있었음

〈표4-2〉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12.1%	17.4%	0.0%

- 휴게시설에 조명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99.0%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시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는 조명이 있지만 조명의 밝기나 다른 공간의 조명과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불편하다고 응답함

[그림16] 조명시설 설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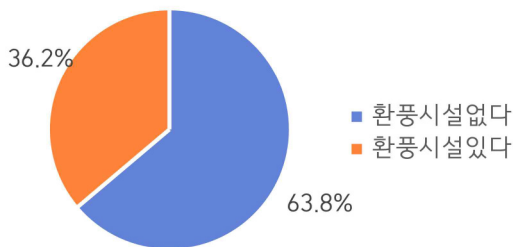


○ 휴게시설에 환풍기기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37.4%만 환풍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는 전부 기기 가동에 제한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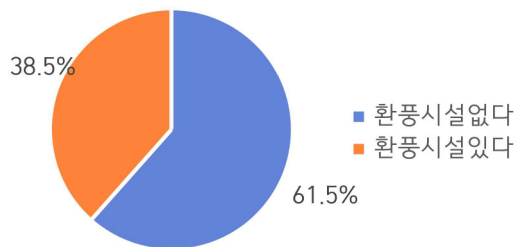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환풍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38.5%였음

[그림17] 환풍기기 설치여부

경비노동자 응답결과



미화노동자 응답결과



-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시설 중 환풍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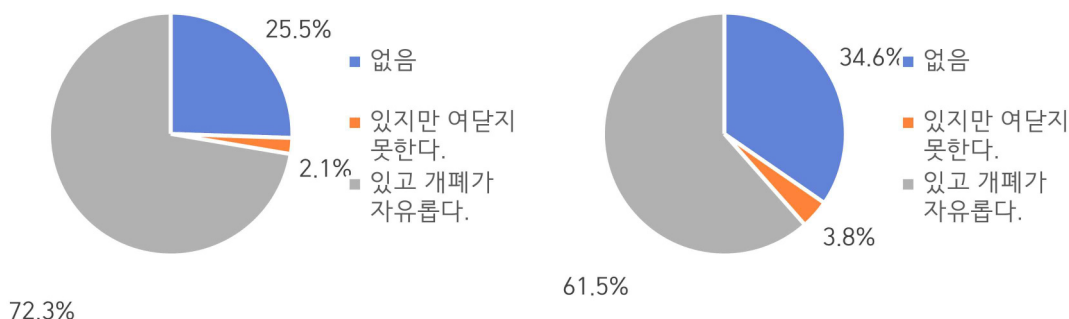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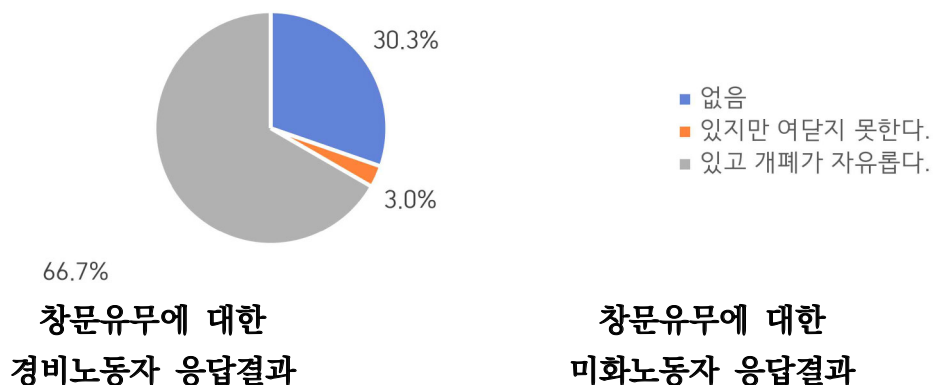
였는데,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환풍기기가 있는 경우가 40.0%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39.1%가 있었음

〈표5〉 휴게시설 환풍기기 설치율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환풍기기 설치율	37.4%	38.5%	36.2%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환풍기기 설치율	39.4%	39.1%	40.0%

- 휴게시설에 창문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66.7%가 창문이 있고 창문 개폐가 자유롭다고 응답하였고, 창문이 있지만 여닫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창문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3%였음. 창문 개폐가 불가능하거나 창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33.3%(33명) 중에서 휴게시설에 환풍기기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21명)였고, 창문 개폐가 불가능하거나 창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33.3%(33명) 중에서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6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96.3%(26명), 지상에 있는 경우가 3.7%(1명)였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72.3%가 창문이 있고 개폐가 자유롭다고 응답하였고, 2.1%가 창문이 있지만 개폐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5%가 창문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61.5%가 창문이 있고 개폐가 자유롭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창문이 있지만 개폐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6%가 창문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그림18] 창문 유무



마. 의자 등 비품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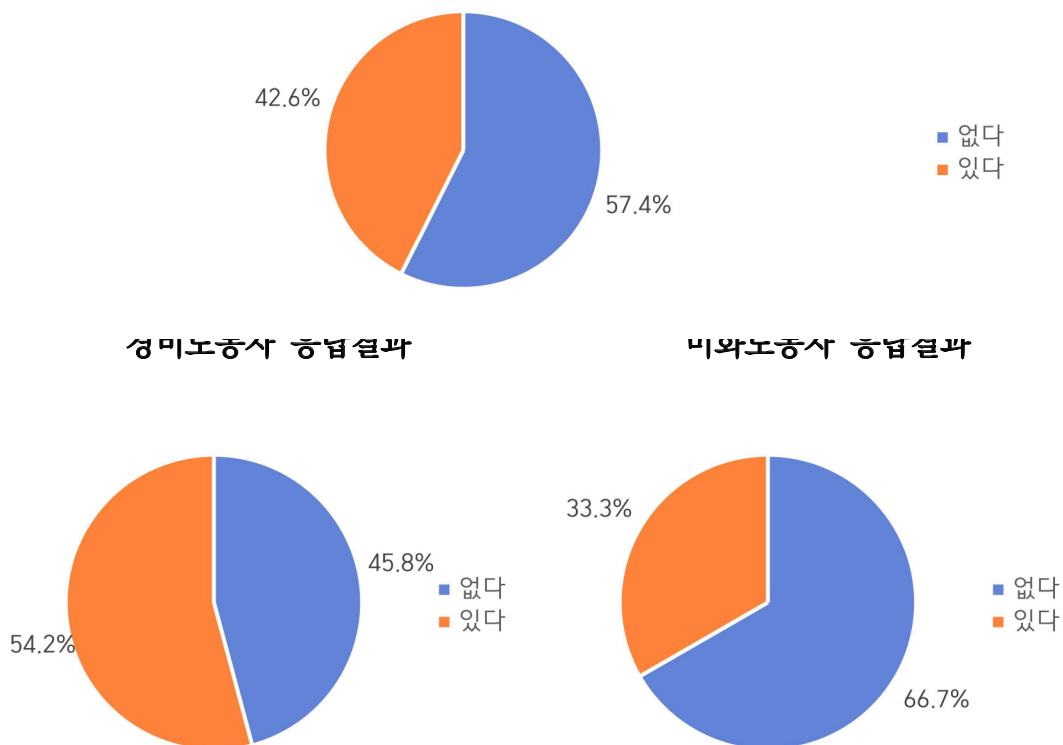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 의자나 소파가 있는 경우는 62.6%였고, 침대가 있는 경우는 28.3%(좌식 구조인 경우가 55.6%),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30.3%,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66.7%, TV가 있는 경우가 15.2%,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54.5%, 식탁이 있는 경우가 26.3%였음. 이 중 좌식구조가 아님에도 침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였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에 의자나 소파가 있는 경우가 74.5%, 침대가 있는 경우는 51.1%, 좌식 구조인 경우가 40.4%,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34.0%,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59.6%, TV가 있는 경우가 21.3%,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59.6%, 식탁이 있는 경우가 8.5%였음

- 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에 의자나 소파가 있는 경우가 51.9%, 침대가 있는 경우는 7.7%, 좌식 구조인 경우가 69.2%,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26.9%,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73.1%, TV가 있는 경우가 9.6%,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50.0%, 식탁이 있는 경우가 42.3%였음

바. 샤워시설 설치

-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2.6%였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54.2%가 샤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화노동자의 경우 불과 33.3%가 샤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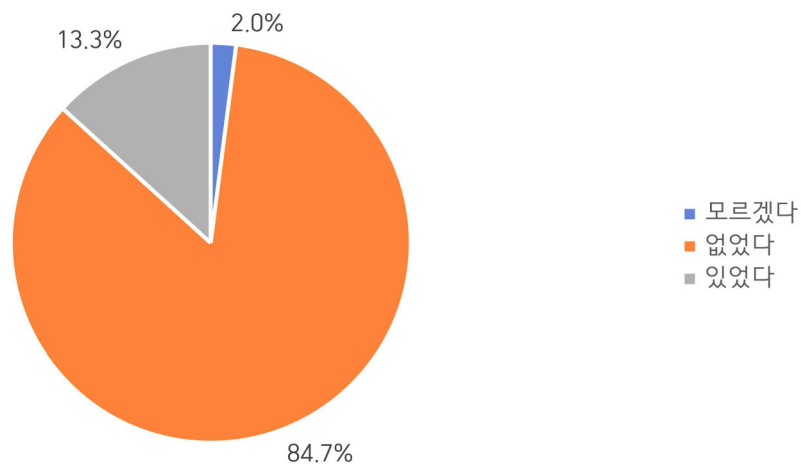
[그림19] 샤워시설 유무



사. 최근 1년 간 개선여부 및 개선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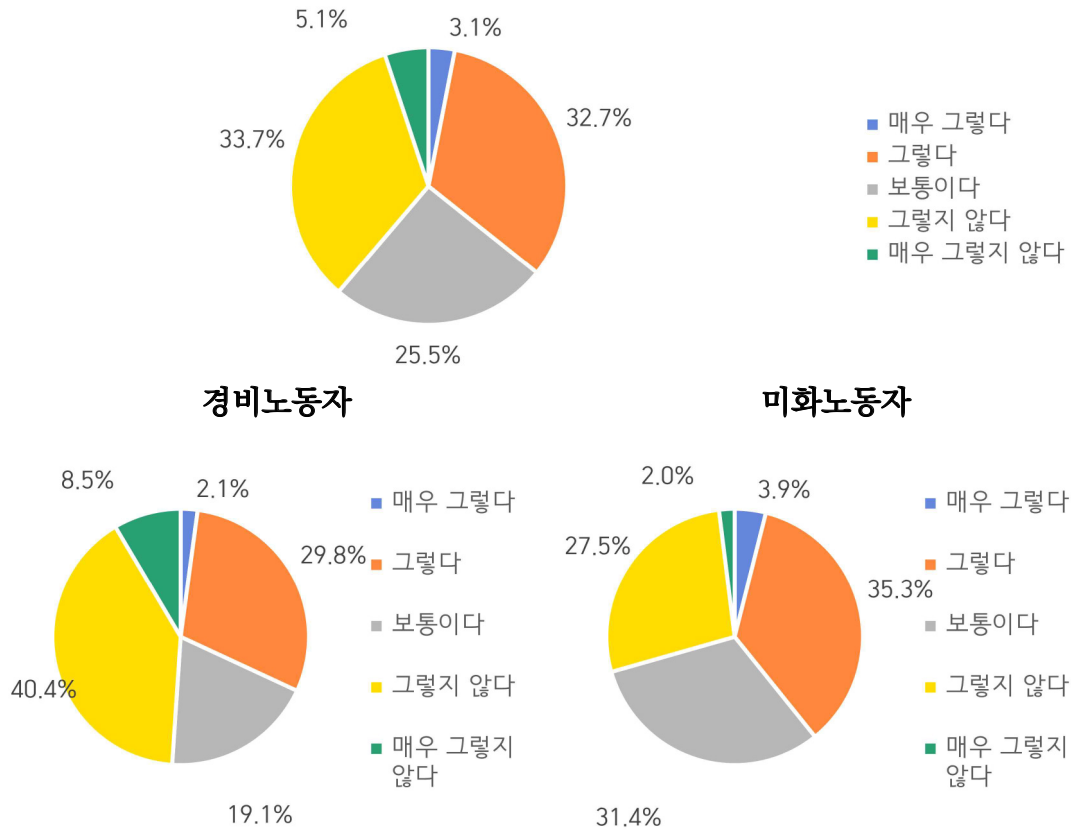
- 최근 1년 이내 휴게시설의 정비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3.3%의 응답자가 휴게시설의 개선 및 정비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음
- 개선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다는 응답과 쾌적한 장소로 이전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고, 문과 바닥을 공사하거나 도배 혹은 도색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침대를 교체했다거나 비품(정수기, 냉장고, TV, 소화기)을 정비·개선·신규설치했다는 응답과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정비·개선·신규설치했다는 응답(2건) 등이 있었음

[그림20] 최근 1년 이내 휴게시설 정비 개선 유무



-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35.8%(매우그렇다 3.1%, 그렇다 32.7%)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였고, 25.5%는 보통이라고 답변함
-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31.9%(매우 그렇다 2.1%, 그렇다 29.8%)가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미화노동자의 경우 39.2%(매우 그렇다 3.9%, 그렇다 35.3%)가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그림21] 휴게시설 개선필요성



- 구체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개선요청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10건), 그 다음으로는 난방시설(9건)과 환기시설(6건), 그리고 샤워시설(5건)에 대한 개선 요청도 있었음. 그 외에도 정수기(3건), TV(3건), 전용 휴게시설(3건), 사물함(2건), 공간 확장(2건), 조리시설, 냉장고, 도배(도색), 가습기, 소독 및 관리, 화장실에 대한 개선 요청도 있었음

<표6> 휴게시설 개선요청사항

개선요청사항	응답수	개선요청사항	응답수
에어컨	10	공간 확장	2
난방시설(바닥난방포함)	9	조리시설	1
환기시설	6	냉장고	1
샤워시설	5	도배(도색)	1
정수기	3	전체환경 개선	1
TV	3	가습기	1
전용 휴게시설	3	소독 및 관리	1
사물함	2	화장실	1

제4장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전용휴게시설 마련

- 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97%가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휴게시설 설치비율 자체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19.6%였으며, 직종별로 살펴보면 미화노동자의 경우에는 11.5%인 것에 비해,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28.9%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 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경비초소, 노인정, 창고, 회의실과 겸하는 경우로서 다양했는데,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경비초소와 겸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였던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이 전용휴게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이용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휴게시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까지를 담보할 수는 없는 부분임
- 특히 경비노동자의 경우, 2019년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진행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에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경비초소와 겸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평균 13.5%가 겸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28.9%가 휴게시설과 경비초소를 겸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이는 별도의 전용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시설 이용상의

편의성 등 이용만족도가 경비초소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경비초소가 대개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기 어렵고 사실상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로서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휴게시설이 없다면 근무장소인 경비초소와는 별도의 전용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 경비초소와는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자들의 쉼터로서의 목적에 부합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한 제반환경의 개선작업 등 만족도 신장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 및 점검

- 휴게시설에 냉·난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냉방기기는 응답자 중 85.9%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난방기기는 89.9%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함 단, 본 조사에서는 선풍기도 냉방기기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니 선풍기만 설치된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임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와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면, 해당 조사에서는 경비노동자 중 에어컨이 설치된 비율은 65.4%, 난로가 설치된 비율은 69.2%였으며, 미화노동자 중 에어컨이 있다는 응답은 60.3%,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였음. 하여 평균적으로는 냉방기기 설치비율이 62.9%였고, 난방기기 설치비율이 79.2%였던 것으로 확인됨
- 냉방기기의 경우 에어컨이 설치된 비율과 선풍기와 에어컨 설치비율을 합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라 설치비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본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신규 설치하였다는 답변이 있기도 하였고, 난방기

기의 경우에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에서 특히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냉·난방기기가 높은 비율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냉방기기 중 선풍기만 설치된 경우에는 한여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냉·난방기기 자체가 없다면 휴게시설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냉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건 중 2.6%는 가동 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난방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건 중 4.5%는 가동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던 바, 냉·난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온도유지를 위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요청하였을 때, 에어컨에 대한 개선 요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난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이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 휴게시설의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충임을 알 수 있음. 특히 경비노동자는 야간에 장시간 수면을 취하는 장소로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게시설의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 및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3. 휴게시설의 지상화 및 환기 문제 개선

- 휴게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5%가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27.0%가,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45.1%가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응답하였음

- 2019년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진행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였던 것에 비하면 은평지역의 휴게시설 지하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보이나, 37.5%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낮은 비율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9%였던 것과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8%였던 것에 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실제로 최근 1년 이내에 휴게시설의 정비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다는 응답은 한 건에 불과했음(물론 이와 별개로 쾌적한 장소로 이전했다는 응답이 있기도 하였으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음)
- 물론 휴게시설 주변 환경이 쾌적한 편이기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답변(47.5%)과 보통이라는 답변(44.4%)이 주를 이루었으나, 부정적인 답변(8.1%)을 한 경우도 있었음.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경우였고,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로 주로 언급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문제’와 ‘채광이 좋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들의 휴게시설도 모두 지하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휴게시설의 쾌적도와 휴게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것은 연관된 문제로 보임
- 실제로 휴게시설에 환풍기기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37.4%만 환풍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환풍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38.5%였음. 즉, 직종을 불문하고 휴게시설에 환풍기기가 설치된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시설 중 환풍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9.4% 였는데,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환풍기기가 있는 경우 가 40.0%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39.1%가 있었음
- 게다가 휴게시설에 창문 개폐가 불가능하거나 창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3.3%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환풍기기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나 되었기에 공기의 질이 매우 열악할 것 으로 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 반한 것임
-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요청하였을 때, 에어컨과 난방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다음으로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이에 휴게시설을 창문이 있는 지상에 마련하는 방법을 고안해보거나, 부득이 지하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면 환풍기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환경으 로 개선해야 함

4. 휴게시설의 지상화 및 습도조절기기 설치

- 휴게시설에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1%만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며,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5 명 중에서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과 3명이었음. 5명 중 1명 은 습도조절기기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기기의 고장으로 사 실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하였기 때문임
-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경비노동자 중 휴게시설에 습도조절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은 2.1%였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7.7%였음. 즉,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시설 중 습도조절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12.1%였는데, 경비노동자 중에서는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습도조절기기가 있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미화노동자 중에서는 17.4%가 있었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적정한 습도 유지에 용이한 지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거나, 습도조절기기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함

5. 침대, 정수기, 냉장고 등 비품구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 의자나 소파가 있는 경우는 62.6%였고, 침대가 있는 경우는 28.3%,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30.3%,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66.7%, 소화기가 있는 경우가 54.5%, 식탁이 있는 경우가 26.3%였음. 이에 전반적으로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게다가 좌식구조가 아님에도 침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8.2%나 있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 그런데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와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품 설치에 있어 의자나 소파 외에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어 보임(물

론 조사기관마다 조사기준이 상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음)

〈표7〉 선행연구 비교 : 휴게시설 비품설치비율

미화노동자	선행연구	본 조사 결과
의자 등	32.1% (소파나 등받이를 갖춘 경우)	51.9% (의자나 소파)
정수기 등	60.6% (정수기나 물 마시는 곳)	26.9% (정수기)
냉장고	91.0%	73.1%
경비노동자	선행연구	본 조사 결과
냉장고	59.6%	59.6%
침구 등	69.2% (취침도구)	51.1% (침대)

-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요청하였을 때, 정수기, TV, 사물함, 조리시설, 냉장고 등 추가 비품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양하게 있었음
- 미화노동자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에 비해서 휴게시설에서 보내는 휴게시간이 긴 편이며, 경비노동자의 경우 수면을 취할 때에도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휴게시설에 필요한 비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이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나 취침도구 뿐 아니라, 휴게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여름에도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를 구비하는 등 필요한 비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7. 샤워시설 설치

-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2.6%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54.1%가 샤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화노동자의 경우 불과 33.3%만 샤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음

- 경비노동자는 경우에 따라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그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화노동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미화노동자 노동실태 선행연구에서 미화노동자를 위한 샤워실이 16.6%만 설치되어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샤워시설 설치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비율로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샤워시설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 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시행일자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3.25.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3.31.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9.17.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9.23.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8.6.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2.11.14.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0.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2020.12.30.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1.13.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1.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7.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2020.12.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20. 12. 16.]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396호, 2020. 12. 16.,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주거재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51-73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

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 2022. 7. 7.]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24호, 2022. 7.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
-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
-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
-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삭제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 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용역·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시,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건물청소원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
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
-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은평구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은평구 미화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 은평구청, 2020, 2020년 은평구 통계연보

부록

- 휴게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공유회 자료집



6. 현재 근로계약기간
(가장 최근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유계약 : ____ 년 ____ 개월
 무기계약

7. 근로 시간

1일 총 근로시간	1일 총 휴게시간	1주 근무일수 (평균)	1주 총 근로시간 (평균)

8.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① 작성 후 교부 ② 작성했지만 미교부 ③ 미작성

8-1. 근로계약상 1일 휴게시간 (예) 11:30 ~ 12:30 1시간,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9. '1일 총 휴게시간' 중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II

근무지(사업장) 현황

10. 현 근무지(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20인 미만 ③ 20인 이상

10-1. 소속된 용역·도급업체 전체 근로자 수 (용역·도급업체 소속일 경우)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20인 미만 ③ 20인 이상

11. 현 근무지(사업장) 근로자 성별 인원수

남성 : 명

여성 : 명

12. 현 근무지(사업장) 건물 형태

- ① 사무실 건물 (외부인 출입이 많지 않음)
- ② 상가 건물 (외부인 출입이 많음)
- ③ 아파트
- ④ 기타 ()

III

휴게시설 관련

13.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13-1.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이상

13-2. 휴게시설이 있다면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① 입사이전부터 있었다. ② 입사이후 새로 생겼다. (____년도 ____월)
- ③ 기타 ()

13-3.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됩니까?

- ① 아니다. (전용휴게공간) ② 그렇다. (타용도(예:경비초소):)

13-4. (전용휴게공간이 있을 시)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지상 ____층 ② 지하 ____층 ③ 실외 ()
- ③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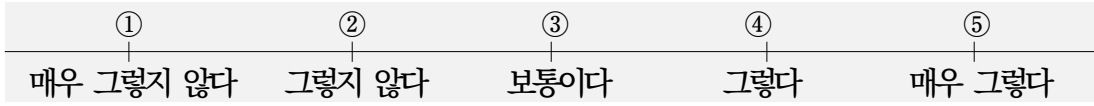
13-5. (초소 등 개인휴게공간이 있을 시)

13-5-1. 휴게공간 이용정도는? 공용휴게공간 : 개인휴게공간 = (:)

13-5-2. 개인휴게공간 면적은?(바닥면적 기준) 평

13-5-3. 개인휴게공간에 있는 비품 및 시설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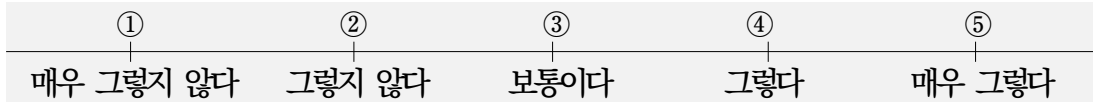
14. 현 근무지(사업장)의 휴게시설 주변 환경은 쾌적한 편입니까?



14-1. 휴게시설 주변이 쾌적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오염,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예)화장실, 쓰레기장 등
- 분진, 소음 발생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예)공사장 등
- 관리가 잘 안돼서 (청소, 위생상태 불량)
- 채광이 안 좋아서
- 환기가 잘 안돼서
- 기타 ()

15. 현 근무지(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15-1. 휴게시설 이용이 꺼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주변이 깨끗하지 않아서 (예)화장실 옆 등
- 주변이 시끄럽거나 먼지가 많아서
- 관리가 잘 안돼서(청소, 위생상태 불량)
- 채광이 안 좋아서
- 환기가 안돼서
- 너무 추워서(더워서)
- 기타 ()

16.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가깝다. (왕복 도보 5분 이내) ② 보통이다. (왕복 도보 5-15분 이내)
- ③ 가깝지 않다. (왕복 도보 15분 이상)

* 노동부 가이드 상 왕복 소요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위 수치는 1시간 휴게 기준임.

17. 현 근무지(사업장)에 휴게시설의 공간(면적)은 충분합니까? (사용인원 대비)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1. 현 근무지(사업장) 동시간대 근무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교대제의 경우 근무조 인원, 외근인력이 있는 경우 상근직 인원 등)

_____ 명

17-2. 휴게시간 지정여부

① 사업장내 휴게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전 인원 동일)
② 휴게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교대로 휴식하는 경우)
③ 기타 ()

17-3. 현 근무지(사업장) 휴게시설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 기준)

_____ 평

17-4. 현 근무지(사업장) 휴게시설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①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다.
② 2.1m 미만인 곳도 있다.
③ 모든 지점에서 2.1m 미만이다.
④ 잘 모르겠다.

18. 남녀 휴게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① 별도로 있다. ② 별도로 있지 않지만 휴게시설 내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③ 그렇지 않다. ④ 기타 ()

25. 휴게편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

※ 의견 청취 후 조사원이 간략히 기술할 수 있음

IV

기 타

26. 성별 및 연령 [남성 / 여성]

① 50대 미만

② 50대 이상

③ 60대 이상

④ 70대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공유회 자료집



—
은평구

미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이진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은평구 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2022. 12. 20.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법적 배경

-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신설조항이 시행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전화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으로 일하는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제외)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목적

○ 연구 배경

- 경비직종의 경우 대표적 감시단속적 업무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온 바, 휴게시간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지, 휴게공간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마련되어있는지 등이 계속 이슈로 등장함
- 미화직종의 경우 경비직종만큼 휴게시간이 길지 않은 직종이기는 하나, 업무 특성 상 환복할 수 있는 공간, 샤워시설 등 휴게시설의 필요성이 큰 직종이라고 볼 수 있음.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실태점검 및 관리, 개선조치 등을 실시하여 옴.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 연구 목적

- 은평구 소재의 미화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 휴게시설 현황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은평구 소재의 공동주택사업장 등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결론 및 제언

○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등의 확인, 설문조사를 통한 은평구 소재의 미화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 휴게시설 현황 파악



현황과 쟁점

연구배경 목적

○ 은평구 일반 현황

- 은평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진관동(전체 면적 중 38.79%)은 뉴타운 지역으로 K-apt에 등록된 아파트단지가 39개에 이르고, 은평구 전체 면적 중 녹지지역(약 46.7%)이 차지하는 지역 외엔 거의 주거지역(약 51.6%)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황과 쟁점

-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수는 전체 주택수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확대되어온 결과로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실태조사 결과

-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이 많이 분포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 점검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경비직종 및 미화직종의 휴게시설을 포함한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역시 이에 포함됨.

결론 및 제언



현황과 쟁점

연구배경
목적

○ 미화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쟁점 사항	쟁점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기준)
휴게시설 위치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휴게시설 주변 환경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바, 주변 환경 점검 필요
휴게시설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6제곱미터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최소높이 2.1미터
휴게시설 온도·습도·조명 및 환기	적정온도(18도~28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능 적정습도(50%~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기능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기능 창문 등을 통한 환기 가능
의자 등 비품 구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사위시설 설치	환경미화업무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세탁시설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 구비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현황과 쟁점

연구배경
목적

○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쟁점

쟁점 사항	쟁점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기준)
전용휴게시설 유무 및 휴게시설 위치	휴게시설과 경비초소 겸용 여부 점검 필요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휴게시설 주변 환경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휴게시설과 경비초소 겸용 시 소음 노출 위험 / 휴게시설 지하 위치 시 위해요소 노출 위험
휴게시설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6제곱미터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최소높이 2.1미터 *휴게시설과 경비초소 겸용 시 크기 미준수 가능성 높음
휴게시설 온도·습도·조명 및 환기	적정온도(18도~28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능 적정습도(50%~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기능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기능 창문 등을 통한 환기 가능
의자 등 비품 구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기타 쟁점	휴게시설 성별구분 설치 여부 :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 가능성, 경비직종과 미화직종 노동자들이 휴게공간 함께 쓰는 경우 문제 가능성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개요

- 은평구 관내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 100명에 대하여 조사원 대면설문조사 실시 (조사에 시설관리직 1명이 포함되어 99명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문 결과 도출)
- 1개 단지 내 평균 2.56명 노동자 대상 조사 (1개 단지 최대 4명)
- 응답자 성별 비율은 남성 58%, 여성 42%
- 응답자 연령구성은 50대 3%, 60대 60%, 70대 이상 36%
- 고용 및 직종 / 근무지 현황 / 휴게시설 현황 / 기타로 구성된 26개 기본문항과 18개 보조문항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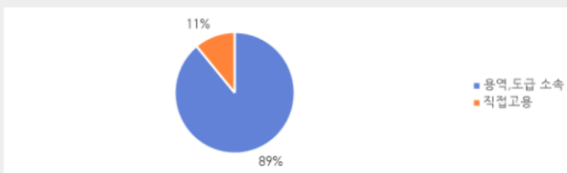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고용 및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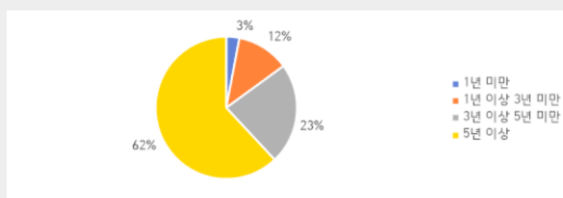
고용 방식



○ 89%가 용역, 도급 소속
직접고용은 11%에 불과

○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소홀 가능성

동종업무 총 경력



○ 5년이상 경력이 62%,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이 23%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인원 중 85%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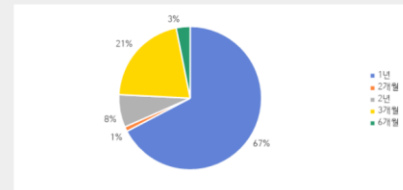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고용 및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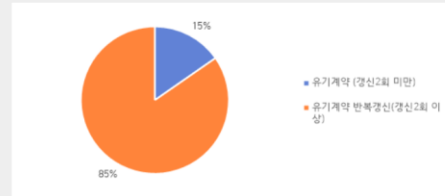
- 무응답자 4명 외 95명(경비-45명, 미화-50명) 기준
1년 단위 계약갱신이 67.4%(64명, 경비-26명, 미화-38명)
3개월 단위 계약갱신이 21.1%(20명, 경비-15명, 미화-5명)
2년 단위 계약갱신이 7.4%(7명, 경비-2명, 미화-5명)
6개월 단위 계약갱신이 3.2%(3명, 경비-1명, 미화-2명)
2개월 단위 계약갱신이 1.1%(1명, 경비-1명, 미화-0명)

근로계약기간(갱신단위)



- 무기계약은 0%
유기계약 2회 미만 갱신한 경우 15%,
유기계약 반복갱신한 경우 85%

근로계약기간 약정방식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근무지 현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근무자 53명(53.5%) : 경비-1명, 미화-52명
24시간 격일제 46명(46.5%) : 경비-46명, 미화-0명
- 주간근무자 총 근로시간 평균 5시간 32분 (경비 1명-8시간, 휴게시간 1시간~1시간 30분)
24시간 격일제근무자 총 근로시간 평균 14시간 53분, 휴게시간 9시간 5분(실제 7시간 53분)
*휴게시간 중 근로한다고 응답한 격일제 노동자가 46명 중 21명(45.7%)

현 근무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 무응답자 1명 외 98명 중
1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42명(43%)
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6명(37%)
20인 이상이라는 응답이 20명(20%)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근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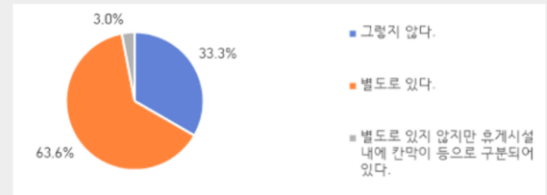
- 응답자 99명 중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96명(97%)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명(2%)
휴게시설이 경비초소라고 응답한 경우 1명(1%)

휴게시설 설치현황



- 응답자 99명 중
휴게시설 남녀구분이 되어있다는 응답이 63명 (63.6%)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이 33명(33.3%)
별도로 있지 않지만 휴게시설 내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3명(3%)

휴게시설 남녀구분 설치여부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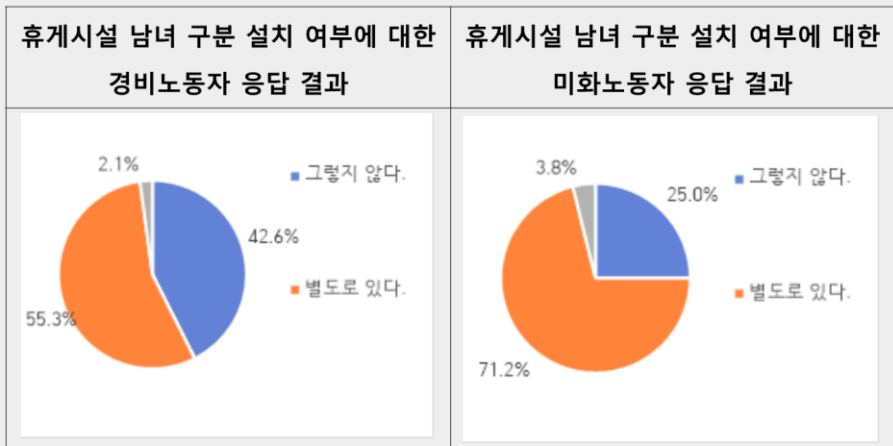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근무지 현황



- 성별 극화 현상이 뚜렷한 직종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으나, 직종 구분 없이 동일한 휴게공간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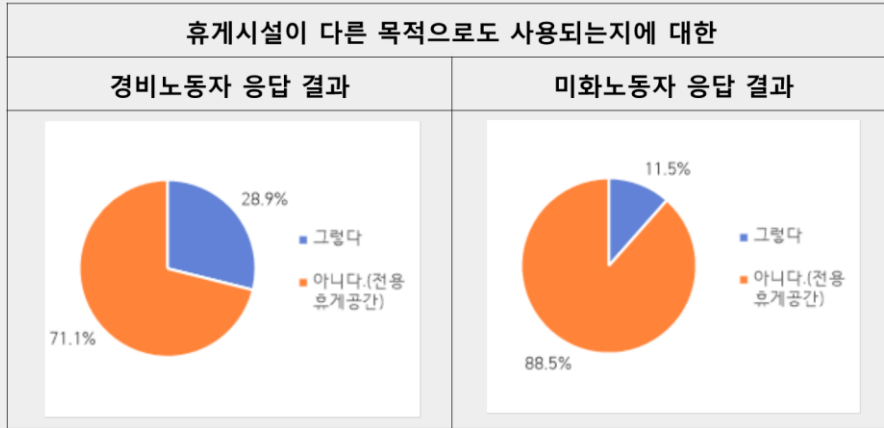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



- 전용휴게시설 갖추고 있다 80.4%
휴게시설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19.6% (경비-초소, 노인정/미화-초소, 노인정, 창고, 회의실)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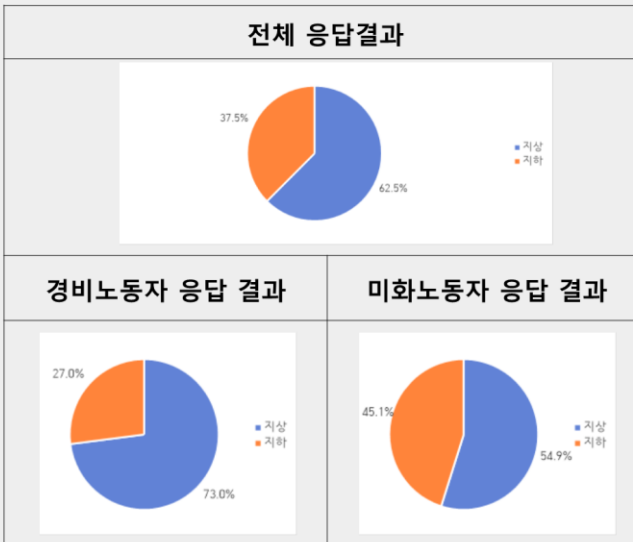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위치



- 11명이 무응답
88명의 응답자 중
55명(62.5%)이 지상에
33명(37.5%)이 지하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
- 직종별로는
경비(응답37명) 중
27명(73%) 지상, 10명(27%) 지하
미화(응답51명) 중
28명(54.9%) 지상, 23명(45.1%) 지하
에 휴게시설 있다고 응답
- 지하 휴게시설 문제
 - 환기 문제
 - 밝기 문제
 - 인체유해요인 존재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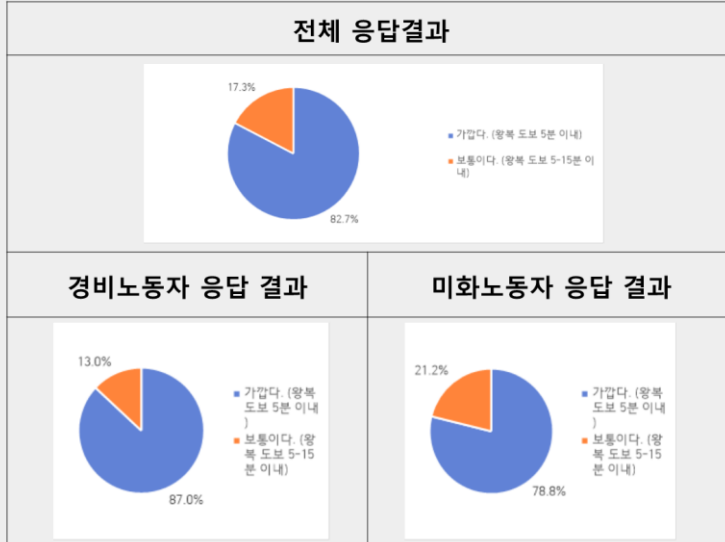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까지의 거리



- 응답자의 82.7%가 왕복 도보 5분 이내로 가깝다고 응답
응답자의 17.3%가 왕복 도보 5~15분 이내라고 응답
(15분 이상이라는 응답자 없음)

- 5분 이내로 가깝다는 응답은 경비직종 87%로 미화직종 78.8%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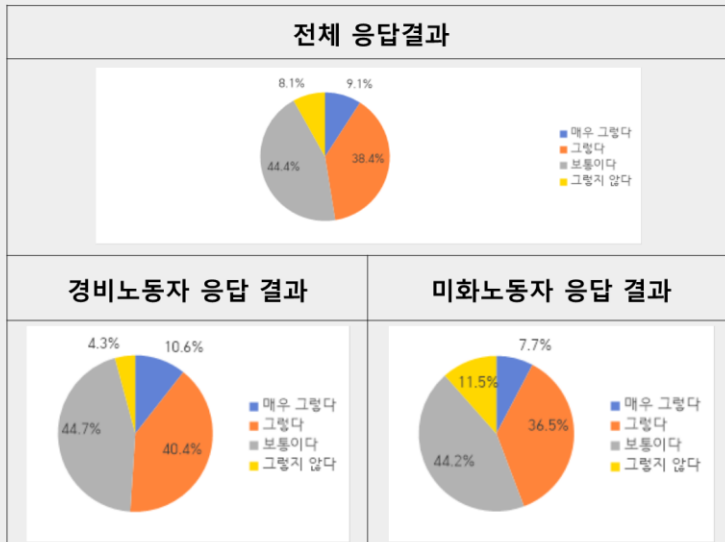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주변환경 쾌적도



- 주변환경 쾌적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47.5%가 그렇다 (그렇다+매우그렇다) 44.4%가 보통이다 8.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0%)

- 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이 경비직종 51%로 미화직종 44.2%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은 경비직종과 미화직종이 비슷하게 약 44%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가능)

	전체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관리가 잘 안돼서 (청소, 위생상태 불량)	2	1	1
채광이 안 좋아서	6	1	5
환기가 잘 안돼서	7	2	5
난방이 안돼서	1	0	1
벽이 더러워서	1	0	1
냄새가 나서	1	1	0
모기가 있어서	1	1	0

-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7명(36.8%)이 '환기가 잘 안돼서'라고 6명(31.6%)이 '채광이 안좋아서'라고 응답하였음.
-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8명)의 휴게시설은 1명 외엔 모두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음.
- 휴게시설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로 환기와 채광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들(7명)의 휴게시설은 모두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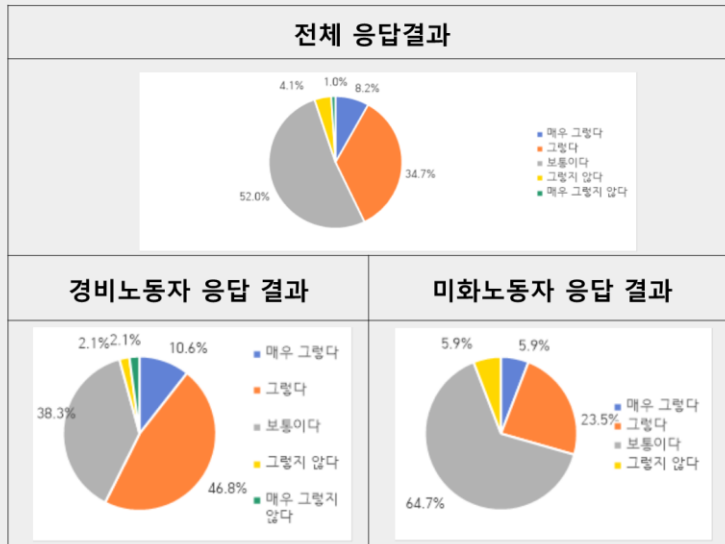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사용빈도



- 휴게시설 사용빈도에 대하여 응답자 42.9%가 자주 이용한다 (그렇다+매우그렇다) 52.0%가 보통이다 5.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이 경비직종 57.4%로 미화직종 29.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경비직종이 휴게시간이 길어서 나타난 차이로 보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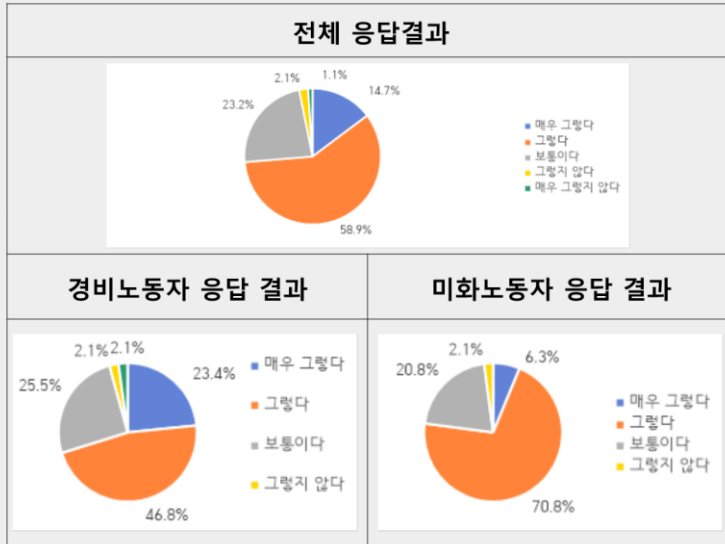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크기(사용인원 대비 공간 충분한지 여부)



○ 휴게시설 크기 충분한지 여부 응답자 73.6%가 그렇다 (그렇다+매우그렇다) 23.2%가 보통이다 3.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는 응답이 미화직종 77.1%로 경비직종 70.2%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실제 최소면적(6㎡)보다 휴게시설이 좁다는 응답은 1명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크기(단위면적(3.3㎡)당 인원)

단위면적(3.3㎡)당 인원	전체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1명 이하	78.3%	85.1%	72.0%
1명초과~2명 이하	18.6%	12.8%	24.0%
2명초과~3명 이하	2.1%	0.0%	4.0%
3명 초과	1.0%	2.1%	0.0%

○ 단위면적(3.3㎡) 당 동시간대 휴게시설 사용 인원을 확인해보니 78.3%가 1명 이하로 나타나는 하였으나, 3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경비노동자의 경우 2.1% 존재함.
○ 휴게시설 크기가 최소면적당인원 6㎡ (약 1.82평) 보다 작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1.5평)에 그침.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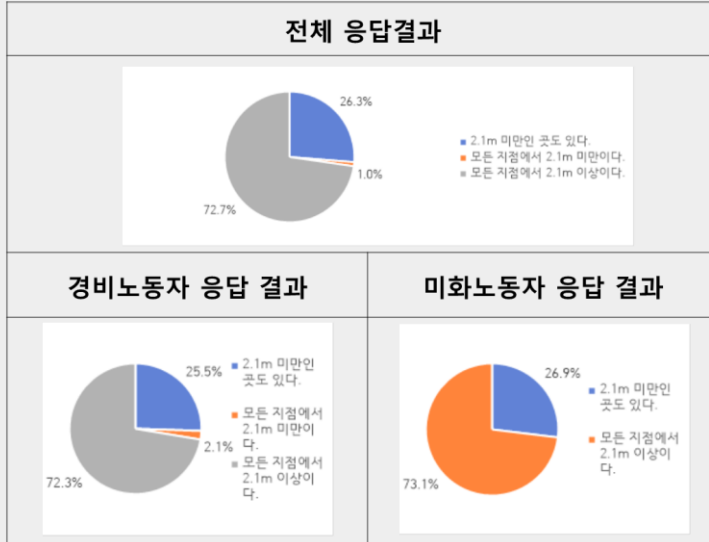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 휴게시설 높이에 대해서 응답자 중 '그 이상이다'가 72.7%, '그 미만인 곳도 있다'가 26.3%, '그 미만이다'가 1.0%

○ 모든 지점 2.1m 이상이란 응답은 미화직종 73.1%로 경비직종 72.3%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다만, 2.1m 미만인 지점이 있거나 모든 지점 2.1m미만인 경우가 미화직종 26.9%(미만인 지점이 있다) 경비직종 27.5%에 달하는 바 법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온도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

○ 냉방기기(선풍기 포함)는 응답자 중 85.9%가, (경비 - 81%, 미화 - 88%) 난방기기는 89.9%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함. (경비 - 87%, 미화 - 90%)

○ 가동 범위 및 가동시간에 제한이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냉방기기 있다는 응답 중 2.6%가 있다 난방기기 있다는 응답 중 4.5%가 있다고 응답함

○ 서울시가 2019년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실태 전수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는 서울시내 경비실은 64%에 불과하였음. 당시 조사에서 자치구별 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성북구와 은평구로 설치율 85%였음. 이후에도 은평구는 2022년에도 20여곳의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지원한 바, 현재 기준 설치율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경비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만큼 휴게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습도

습도 조절기기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과
쟁점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5.1%	7.7%	2.1%

실태조사
결과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습도조절기기 설치율	12.1%	17.4%	0.0%

결론 및
제언

- 응답자 중 5명(5.1%)만이 설치되어있다고 응답 (그 중 3명-사용 제한 없다, 1명-제한 있다, 1명-고장상태)
- 설치되어있다는 응답은 경비직종 1명(2.1%), 미화직종 4명(7.7%)
-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 (지하 휴게시설: 88명 응답자 중 33명/경비-10명, 미화-23명) 설치되어있다는 응답은 전체 4명(12.1%), 경비직종은 0명(0%), 미화직종은 4명(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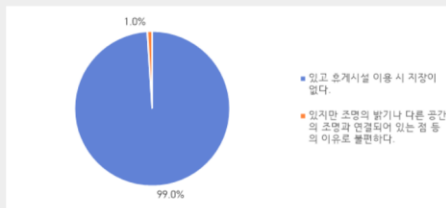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조명

조명시설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 응답자 98명 중 97명(99.0%)가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있고 이용 시 지장이 없다고 하였고, 1명(1.0%)가 조명시설 있지만 조명 밝기 등의 이유로 불편하다고 하였음.

결론 및
제언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환기

환풍기기 설치 여부			
○ 응답자 99명 중 37명(37.4%)만 환풍기기 설치되어있다고 응답			
경비노동자 응답 결과	미화노동자 응답 결과		
	전체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환풍기기 설치율	37.4%	38.5%	36.2%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환풍기기 설치율	39.4%	39.1%	40.0%

- 응답자 99명 중 37명(37.4%)만 환풍기기 설치가 되어있다고 응답
- 경비직종의 경우 47명 중 30명(63.8%)이 없다 17명(36.2%)이 있다고 응답
- 미화직종의 경우 52명 중 32명(61.5%)이 없다 20명(38.5%)이 있다고 응답
-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설치율이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나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휴게시설 창문유무

창문 유무			
○ 응답자 99명 중 66명(66.7%)이 창문이 있고, 개폐가 자유롭다			
○ 응답자 99명 중 3명(3.0%)이 창문이 있지만 여닫지 못한다			
○ 응답자 99명 중 30명(30.3%)이 창문 자체가 없다			
경비노동자 응답 결과	미화노동자 응답 결과		

- 응답자 99명 중 창문이 없거나 창문 개폐가 불가능하다는 경우가 33명(33.3%)에 이룸
- 33명의 응답자 중 휴게시설에 환풍기기도 없다는 응답 21명(63.6%)로 나타남
- 33명의 응답자 중 무응답자 6명 외 27명 중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는 응답이 26명(96.3%), 휴게시설이 지상에 있다는 응답이 1명(3.7%)임
즉, 지하 휴게시설의 환기 기능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의자 등 비품 구비

비품 구비 관련 설문 결과 :

- 휴게시설에 의자나 소파가 있다 62.6%
 - 침대가 있다 28.3%, 좌식구조다 55.6%
좌식구조 아닌데 침대도 없다 18.2%
 - 냉장고가 있다 66.7%
 - 소화기가 있다 54.5%
 - 정수기가 있다 30.3%
 - 식탁이 있다 26.3%
 - TV가 있다 15.2%
- 경비직종의 경우 침대가 있는 경우 24명(51.1%), 좌식구조인 경우 19명(40.4%)
나머지 4명(8.5%)은 제대로 수면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4명 모두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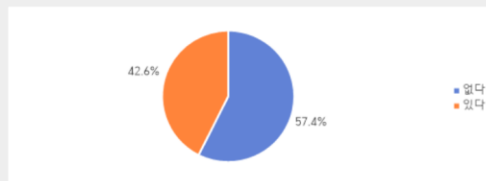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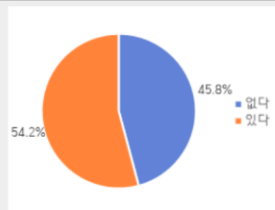
결론 및
제언

○ 휴게시설 현황_샤워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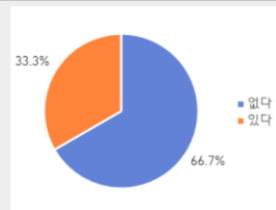
전체 응답결과



경비노동자 응답 결과



미화노동자 응답 결과



- 샤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54명 중 31명(57.4%)이 없다, 23명(42.6%)이 있다고 응답
- 미화직종의 경우 응답자 30명 중 20명(66.7%)이 없다, 10명(33.3%)이 있다고 응답
- 경비직종의 경우 응답자 24명 중 11명(45.8%)이 없다, 13명(54.2%)이 있다고 응답
- 미화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면 및 목욕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최근 1년간 휴게시설 개선 여부

개선 여부 설문 결과 : 응답자 98명

○ 13명(13.3%) 있었다, 83명(84.7%) 없었다, 2명(2%) 모르겠다 응답

- 개선된 사항

- :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다 / 쾌적한 장소로 이전을 했다
- : 문 공사 / 바닥 공사 / 도배 / 도색 등
- : 침대 교체했다
- : 비품(정수기, 냉장고, TV, 소화기)을 정비·개선·신규설치했다
- :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정비·개선·신규설치했다



실태조사 결과

연구배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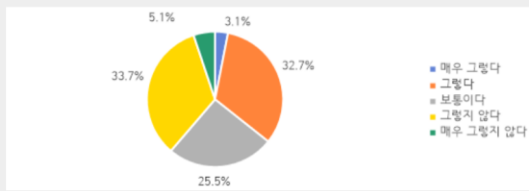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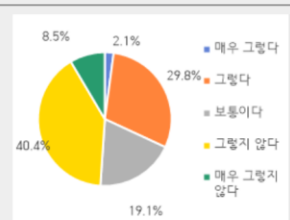
결론 및
제언

○ 최근 1년간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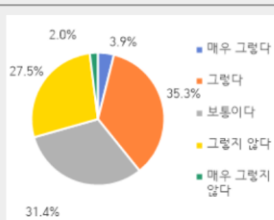
전체 응답결과



경비노동자 응답 결과



미화노동자 응답 결과



○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 35.8%가 그렇다
(그렇다+매우그렇다)
25.5%가 보통이다
3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 : 에어컨 10건
- : 난방시설 9건
- : 환기시설 6건
- : 샤워시설 5건
- : 정수기 3건
- : TV 3건
- : 전용 휴게시설 3건
- : 사물함 2건
- : 공간 확장 2건 등



결론 및 제언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전용 휴게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 및 점검
- 휴게시설의 지상화 및 환기 문제 개선
- 침대, 정수기, 냉장고 등 비품구비
- 샤워시설 설치
-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



연구배경
목적

현황과
쟁점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제언

감사합니다

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전후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현황 비교

임건우 노무사
(노무법인 오늘)



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전후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현황 비교

공인노무사 임건우
노무법인 오늘

1.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의 휴게시설 관련 법령 현황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게시설 관련 법령은 크게 해당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용역업체·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 노동관계와는 무관하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된 법령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이라면 후자는 주택법과 같은 건설관계법이 해당한다.

이중 사용자와 근로자를 직접 규율하는 노동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2020년 11월 강서구 조사 당시 노동법령상 사용자에게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즉,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보건조치 의무, 제64조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원청의 의무가 있었으나, 제39조의 경우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한 작업에 대한 규율인 점, 제64조는 기존 휴게시설을 도급 근로자가 이용하도록 협조하는 수준의 규율인 점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법령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이외에,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에서 공간(위치와 규모), 환경(조명, 대기, 소음), 비품(가구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금번 2022년 12월 은평구 조사 당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와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1,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졌다. 특히, 휴게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2020년 11월 조사당시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했던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가 법적 기준으로 포함된 바, 이러한 법령상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강제력 있는 법상의무가 발생한 이후 휴게시설 현황과 법상 의무가 미비했던 2020년말 휴게시설 현황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토록

하겠다. 법상 의무가 시행되지 불과 3~4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해당 규정이 공포된 것은 2021년 8월로 1년의 개도기간이 부여되었던 점, 휴게시설 미설치 뿐만 아니라 세부설치 기준 위반시에도 상당한 벌칙이 부과되는 점, 법위반 판단기준인 휴게시설 가이드는 2014년 이전 배포되어 법기준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제안되었다 해결책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

2. 휴게시설 현황 조사결과 비교 (2020년 11월 vs 2022년 12월)

구분		2020년	2022년
별도 휴게시설 설치 여부		별도 휴게시설 설치 58.5%	별도 휴게시설 설치 88.5%
휴게시설 설치 장소		지상 57.5% 지하 42.5%	지상 62.5% 지하 37.5%
휴게시설의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평 미만 24% • 2평 이상 76% ※아파트당 평균 경비원 수 약 4.7명	휴게시설 1평당 사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이하: 78.3% • 1~2명: 18.6% • 2명 초과: 3.1%
휴게시설 남녀구분		남녀구분 73.9% 남녀통합 26.1%	남녀구분 66.6% 남녀통합 33.3%
휴게시설 비품	냉방기기(에어컨)	66.2% ※선풍기 포함시 97.7%	85.9%
	난방기	94.6%	89.9%
	환기장치	62.4%	37.4%
	습도 조절 장치	9%	5.1%
	정수기	31%	30.3%
	냉장고	77.1%	66.7%
	침상	89.8%	28.3% ※좌식 휴게시설의 경우 55.6%
	의자/소파	64.7%	62.6%
휴게시설 미사용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하자(지하에 있어 공기가 나쁘거나 냄새남, 근무장소보다 시설 열악 등) : 응답자 294명중 11건 ▪ 이용여건 제한 (비상시 대응 등) : 응답자 294명중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하자: 응답자 99명중 11건

- 응답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고 조사결과 중 공통되는 내용(별도 휴게시설의 설치, 설치 장소, 면적, 남녀구분, 비품, 휴게시설 미사용 이용)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함
- 비교대상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별도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 휴게 시설 비품 중 환기장치와 침상의 유무임
- 환기장치의 경우 2022년 은평구 조사 결과가 2020년 강서구 조사결과에 비해 25%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침상의 유무도 2022년 은평구 조사 결과가 2020년 강서구 조사결과에 비해 최대 60% (좌식 휴게시설의 경우 3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별도 휴게시설의 설치 비율은 2022년 은평구 조사 결과가 2020년 강서구 조사결과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고 지상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비율도 5% 이상 증가함. 추가적으로 휴게시설 면적당 이용인원을 비교하면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1평에 약 1.2명이상 쓰는 비율이 24%, 1평에 1.2명 보다 적은 인원이 쓰는 비율이 76% 수준으로 2022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임
- 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시설 변화를 종합하면, 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비율이 증가해 경비·미화원에게 휴게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휴게시설 이용시 활용되는 휴게환경은 규모,시설 등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환기시설 설치 결과는 별도 휴게시설의 설치 비율이 높고 휴게시설이 주로 지상에 설치된 결과에 따른 내용으로 추정되며, 침상 유무는 누워서 잘 수 있는 비품을 모두 침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추정되어 실제 특정 휴게시설의 설치 비율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2022년 조사결과에서도 휴게시설이 열악해 휴게시설 이용을 꺼린다는 응답이 응답자 99명중 11건에 이르는데, 이는 2020년 조사시 응답대상자 294명중 11건보다 늘어난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3. 경비원, 미화원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2020년 강서구 조사 결과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을 주된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2021년 휴게시설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2022년 8월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2022년 은평구 실태조사에서 휴게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휴게시설 미설치 외에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벌칙기준의 강화

2020년에는 휴게시설 설치 자체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나 이는 감시단 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며, 이는 2022년 조사결과에서도 형식상이나마 휴게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재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에서는 휴게시설 미설치와 설치·관리 기준 위반의 벌칙기준을 구별했고, 설치·관리 기준 최초 위반시 과태료는 불과 5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노동법상 분쟁을 제기하고 실제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극히 드문점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50만원이 실효적 강제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현재 경고 차원에 불과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감독관청의 상시적 점검, 혹은 공동주택 관리단의 자율점검 및 보고의무 등을 통해 휴게시설에 관한 법령이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이 기울여 져야 겠다

(2)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확대

앞서 2020년 조사결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직도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순히 휴게시설에 관한 사용자 혹은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실효적으로 휴게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단이 휴게시설과 관련된 벌칙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휴게여건 개선 →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 경비/미화 서비스질 향상 → 근로자 처우개선’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 투입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현행 사업장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의 한계

변수지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약속)



현행 사업장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의 한계

변수지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약속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자체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왔고, 그 결과 아파트 경비 노동의 주된 특성으로 중고령 노동, 고용형태 불안정, 단기 근로계약, 업무 외 노동, 높은 업무강도, 휴게권 보장 미흡 등이 확인되어왔다. 또한 2021년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¹⁾에 따르면 미화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유발업무 수행, 화학물질 노출, 고용불안정 및 열악한 휴게공간 등 건강권 위해요인들이 도출된 바 있다.

아파트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는 중고령 노동, 고용 불안정, 휴게권 보장 미흡이라는 공통적인 불안정 요소가 존재했고, 특히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노동자임에도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아파트가 다수 발견됐다.

노동자 휴게권과 휴게시설 관련 쟁점은 비단 아파트 노동자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업무와 휴게의 물리적인 분리를 담보하는 휴게시설의 설치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사업장들이 갖춰나가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법령 제정 등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추가했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더불어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로 정하였다. (과태료 규정의 경우 2022년 8월 18일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3년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및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됨). 휴게시설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관련 법제정은 여러 방향에서 아쉬움과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관리 대상 사업장 규모가 문제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과태료 대상,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및 과태료 대상 사업장을 20인 이상 사업장 및 취약 직종 2인 이상 사업장으로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함

1)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2021),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으로써,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은 현저히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전체 사업장의 5.9%만 해당 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노동자 휴게권의 보호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권을 비롯한 노동권 보호가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20인 이상 사업장 5.9%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이 이미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의 실질적인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는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보호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 취약 직종 2인 이상 사업장으로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추가 대상 사업장의 7개의 '취약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에 해당한다. 위 직종에 해당하는 상담노동자, 돌봄노동자, 배달노동자,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는 현장에서 높은 업무 강도 또는 휴게권의 미흡함이 두드러지는 직종이다.

취약직종이 포함된 소규모사업장(10인~20인 사업장) 대한 배려임은 분명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휴게시설 의무화의 사각지대가 많다. 먼저, 고용형태가 근로계약 노동자가 아닌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간병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 배달원, 보험상담원 상당수는 고용형태가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당 직종이 취약하여 추가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정작 해당직종의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직업분류에 따라 취약직종을 경직적으로 분류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직업분류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을 말하는데, 종합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휴게권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은 위 '돌봄 서비스 종사원'에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직업분류상 다른 직업에 해당함). 이렇듯 추가 대상인 취약직종이 의도한 바와 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직종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이 문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크기와 높이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다. 해당 규정은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등²⁾이다. 그 외에 적절한 조명, 창문을 통한 환기 가

2)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러한 최소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능,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 휴게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업 목적에 따라 노동자들의 업무 형태는 천차만별이고 필요한 휴게시설과 실질적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역시 모든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휴게 시설은 노동자와 대상자와의 분리가 중요하며, 야간휴게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중요하다. 결국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은 최소한 규격과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들고 있다. 이 역시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 노동자가 목소리를 모으기 힘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행규칙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업무 방식, 환경 등 다양한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규정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앞서 다룬 휴게시설 관련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는 과태료조항이 없을 뿐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있는 점을 근거법률로 하여 취약노동 사업장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휴게시설 개선·설치 사업 지원 역시 과태료 대상 예외로 휴게시설 설치 유인이 떨어지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의 한계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기조 역시 2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20인 미만 사업장들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 법령이 사업장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금번 은평구 아파트 경비·미화 휴게시설 실태조사와 같은 업종·업태의 특성에 기반한 휴게시설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항을 두고 있음

현장발언

은평구 경비노동자



연구보고서 EPLC 2022-R01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인 강화연

발행처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45

전화 02-6952-1872

홈페이지 www.eplabor.org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